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한국 공공외교법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한국학

진위난

Master's Thesis of International Studies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and
the Impact of the Public Diplomacy
Law in South Korea**

February 2021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JIN Yunan

한국 공공외교법의 특징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태균


이 논문을 국제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진위난

진위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월

위원장 박태균  (인)

부위원장 한정훈  (인)

위원 Erik Moberand  (인)

국문 초록

1965년 공공외교 개념이 처음 제기된 이래 반세기가 지나면서 세계의 역사는 대 격변을 겪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정치선전의 도구로 활용됐던 공공외교는 9.11테러로 미국이 한 국가에 대한 공공외교의 외교전략적의 중요성이 재부각되었으며, 이후 공공외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늘어나면서 각국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활발히 추진하게 됐다.

한국의 공공외교 역사를 살펴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내 정치와 경제를 주축으로 한 국은 대외문화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스포츠 대회에의 참여와 유학생과 연구학자들의 해외 교류학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에는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지정해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한국은 공공외교를 매우 중시한다. 2016년 한국은 공공외교법이 공포되었고, 이듬해 시행령이 공포되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한국 공공외교 사업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전반을 체계화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는 우선 공공외교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이 법안의 핵심적 특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에 대한 한국의 목적과 발전 요구,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공공외교법의 13개의 조항에 대한 분류 및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의 큰 특징을 크게 3가지

로 정리했다. 우선 공공외교 사업 질적 측면에서 보면 공공외교의 수준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제도와 정책의 구체적 측면에 대한 계획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사업 실행주체 측면에서 새로운 공공외교 시대를 배경으로 공공의 힘을 강조하고 국가는 '공중'(Public)의 힘을 강조한다. 이러한 특성 분석을 통해 공공외교법 공포 이후 한국의 새로운 단계의 공공외교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의 계획에 대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을 분석한다.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법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법 제정 내용에 어떤 장점과 특색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법률 설정 내용과의 비교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외교법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측면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외교 업무 부문 구분이 한층 명확해져야 한다; 셋째, 공공외교사업 '민간화'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법률적인 측면에서 신문 언론 사업에 대한 규정과 사용이 부족하다; 다섯째, 주체 권한 구분과 교부금 구체 이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감독체제가 엄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법을 분석한 뒤 한국공공외교 실천의 현황을 조사한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은 시점으로 구분해 이전과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전반의 추진실천 현황을 조사한다. 공공외교법은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전략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 이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도하는 공공외교 사업은 여러 새로운 변화가 있다. 입법 이후 예산 투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된다. 국민외교가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문화외교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문화외교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책외교 분야 사업 추진도 확대했다. 더불어 공공외교법 시행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추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국 국민의 국가 이미지 평가 조사 결과와 각종 기관이 분석한 한국의 국제 위상지수 양 측면에서 공공외교의 효과를 분석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의 큰 진전이다. 법으로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고, 보다 명확한 전략지도를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러나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초보적인 발전 단계로, 법률정책 자체나 공공외교의 구체적 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개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 제정에서 상호 협력과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가 권한의 크기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권한 구분이 모호하면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업무가 겹치거나 업무가 서로 통제되지 않는 모호한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외교는 문화외교의 영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다른 분야의 공공외교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실천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유효성을 제고해야 되고 사업성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본말이 전도된 것인지는 관련 정책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외교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특성, 국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를 현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공공외교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교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공공외교도 그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한국 공공외교, 공공외교법, 문화외교, 국가이미지
학 번: 2018-25119

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공공외교 개념의 정립과 변천	1
2. 연구 목적	8
3. 선행연구	9
4. 연구 방법	16
II 한국의 공공외교법	19
1. 공공외교 발전의 중요성	19
2. 한국의 공공외교법	26
1) 공공외교법의 내용 분석	27
2) 공공외교법의 특징 분석	36
3. 미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외교법의 내용과 특징	39
1) 미국: 스미스-몬트법(1948년 정보 및 교육 교류 법)	39
2)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48
3)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법률	52
4. 비교: 한국의 공공외교법에서 나타나는 특징	56
III 한국의 공공외교법 통과 이후 공공외교 활동	62
1. 2016년 이전의 공공외교 현황	62
1)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 1993년~2008년	64
2) 공공외교의 “원년” 확립: 2008년~2016년	66

2. 2016년 이후 공공외교의 변화	70
1) 변화:	71
2) 한국 공공외교 효과성에 대한 평가	78
IV 결론: 한국 공공외교법의 성격과 평가	89
참고문헌	96
부록	108

<표 차례>

<표 1> 공공외교 소개-공공외교의 역사적 배경	8
<표 2> 공공외교법 조항 분류	27
<표 3> The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 41	
<표 4>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2014년6월13일 법률 제67호) 52	
<표 5>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54	
<표 6> 공공외교 추진현황	65
<표 7> 한국 공공외교법 시행 전후 업무 종류 비교	74
<표 8> 외국인 한국에 대한 평가 및 영향 요소	84
<표 9> 2019 각국 한국의 국가이미지 평가	86
<표 10>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국제위상 변화 추이	90

<그림 차례>

<그림 1> 공공외교의 정의	5
<그림 2> 한국 경제성장률	24
<그림 3> 공공외교법에 따른 공공외교사업 운영 순서도	37
<그림 4> 한국 공공외교 예산변화 추이	76
<그림 5> 국가이미지 평가	81
<그림 6> 2019 각국 한국의 국가이미지 평가	86

I 서론

1. 연구 배경: 공공외교 개념의 정립과 변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는 1965년 터프츠(Tufts)대학의 국제관계 및 법학대학원인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학장이자 전직 미 국방부 해외 근무 직원이었던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Gullion)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 센터(Edward R. Murrow Center of Public Diplomacy)를 설립하면서 고안했다¹⁾. 공공외교는 외교정책을 제정 및 실행과정에서 대중들이 갖는 태도에의 영향력을 다루는 것이다. (니콜라스 J.컬 Nicholas J.Cull, 2009) 20세기 70년대에 현실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추구했던 닉슨 대통령 시기에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냉전 종료 후에 90년대의 미국 공공외교 이론은 더 깊게 연구되어지며 미디어학 분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90년대 말까지 공공외교론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며 공공외교를 프로파간다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의 공공외교는 냉전 구조 아래 하드파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해당국의 여론을 움직이려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²⁾

냉전이 종식된 이후 공공외교의 발전은 정체 상태에 빠졌다. 소련의

1) 니콜라스J.컬. 2013. 「걸리온 이전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라는 용어의 변천과정」.낸시스노우, 필립 M. 테일러 (역은이). 『21세기공공외교핸드북』. 서울: 인간사랑. pp.56-66.

2) 외교부 공식 웹 사이트: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붕괴로 세계를 홀로 제패하게 된 미국은 공공외교로 본국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다른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목표의 중요성이 사라졌다. 1990년대까지도 학계에서 공공외교론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한 가운데, 미국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했던 신문국이 국무부에 병합됨에 따라 공공외교학의 입지는 더 약해지게 되었다.³⁾

2001년 9.11테러는 미국 내에서 언론과 의회, 미국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Liu Debin, 2015) 미국 외교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관계위원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는 2001년 11월에 정부, 언론, 공공관계 및 지역 연구전문가들을 모아 미국의 외교적 위기를 공동 연구한 후에 공공외교가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⁴⁾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주요 국가들이 공공외교를 중시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민주주의의 확산,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세 가지이다.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 간 대화와 협상하는 외교 방식은 변화가 생겼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은 수평적인 쌍방향 공공외교 방식으로 변해왔다. 이런 공공외교의 방식은 소프트 파워의 힘을 더 강조하고 인터넷과 각종 다매체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국민과 수평적인 교류를 쉽게

3) 韩方明. 2011. 『公共外交概论 (新编国际关系学系列教材)』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4) Peter G.Peterson, Jennifer Sieg. 2002. "Public Diplomacy: A Strategy for Refor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21세기의 신 공공외교다.

세계정세가 전개됨에 따라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의는 끊임 없이 변화했다. (Cull 2008; Zhao Qizheng, 2014;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2015; Liu Debin, 2015; 백우열, 2017) 1950년대 공공외교 개념이 처음 제시됐을 때 공공외교란 국제방송을 포함한 정보활동 및 교육문화 교류 활동 등 주로 미 신문사의 비전통적인 외교활동을 가리키기도 했다. 머러 센터는 이른 시기에 출판한 책자에서 공공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공공외교가 ... 공공의 태도가 외교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전통외교 이외의 국제관계, 타국 정부의 공공여론 양성, 사적 단체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외교업무와 그것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업무 중에 교류하는 사람 간의 교류, 예를 들면 외교관과 외국 통신원 간의 교류, 다문화 교류 과정에서 공공외교의 중심은 정보와 사상의 글로벌 교류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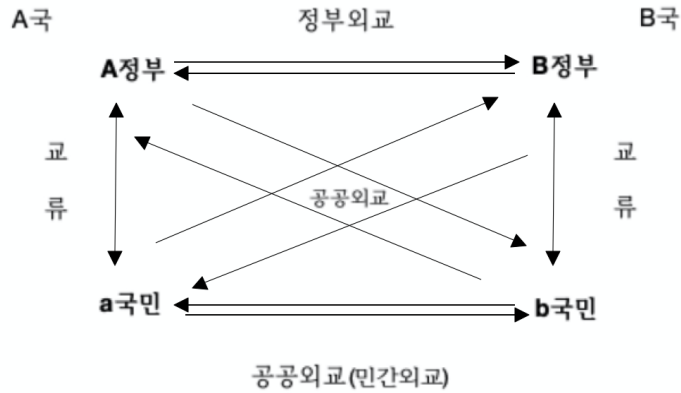
전통적인 공공외교란 한나라가 말하며 다른 나라의 대중이 듣는 과정이고 타국의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주고, 접촉함으로써 본국의 목표와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개인 및 단체들이 다른 나라 대중의 태도와 의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타국 정부의 외교 결정에 영향을 미치

⁵⁾ "What is Public Diplomacy". <http://www.publicdiplomacy.org/> (검색일: 2020.10.5.)

고 있다는 변화도 생겼다. 제임스 파먼트 (James Pamment)는 공공외교는 국제행동체의 정책과 외국국민의 교류를 의미한다. 외국 국민은 시민사회대표,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기자언론기관, 산업정치문화 등을 포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일반 대중도 포함된다. 여기서 '국제행위체'는 엄연히 국가가 아니라 비국가 국제행위체도 포함한다.

당연하게도 공공외교에 대한 시각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별 처한 국제적 환경과 공공외교의 구체적 목표가 서로 다르고 시대별 변화에 따라 공공외교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Zhao Qizheng(2014)는 공공외교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각국 정부 주도, 외국 대중 대상, 자국의 이미지 제고라는 주로 3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Zhao Qizheng(2014)는 공공외교의 범주를 넓히고, 대중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를 모두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유형은 "한 나라 정부 대 다른 나라 국민", "한 나라 대중 대 다른 나라 정부", "한 나라 대중 대 다른 나라 대중" 등이 있다.⁶⁾

⁶⁾ 赵启正. 2014. 『公共外交战略』 北京:学习出版社



<그림 2> 공공외교의 정의

자료: 赵后正. 2014. 公共外交战略 北京: 学习出版社

1960년대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Gullion)의 학자들이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제시한 지 60년 만에 국제정세, 통신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화와 세계화로 외교방식이 바뀌면서 각국 지도자들은 새로운 외교방식에 맞춰 외교정책을 조정해 국익을 실현해 왔다. 공공외교는 본질적으로 전통외교의 보완과 발전이며, 근본목표는 역시 자국의 외교정책 추진과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 외교와는 또 다르다. 공공외교의 주체 행위자는 여전히 정부이지만 주도권이나 권한을 실시할 수 있는 행위체는 회사, 비정부기구, 개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공공외교가 전통외교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공공외교의 수단이 피알, 홍보, 인문교류와 원조 등 있고 주로 소프트 파워에 의존한다⁷⁾.

⁷⁾ 吴超. 2013. 「公共外交对中国和平崛起的意义分析」. 『理论探讨』第8期
<http://www.chinapda.org.cn/chn/xsdt/t1100407.htm> (검색일: 2020.4.17)

특히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와 워싱턴DC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래 공공외교는 세계 여러 곳에서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새로운 공공외교 개념은 공공외교의 주체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비국가 행위자, 초국가 단체 및 비정부기구, 심지어 개인회사, 이들이 외국 대중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공공외교 정책과 방법을 수립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공외교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미디어와 통신기술로 인한 정보 민주화는 새로운 힘의 하나로 국가 행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큰 권력을 부여하고 국제정치에서의 역할과 합법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새로운 공공외교는 호혜 관계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호혜 관계는 국가가 아닌 여러 참여자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환경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런 새로운 외교는 외교부의 전통적인 국가외교를 단기간에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국가 간 교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부와 외교관은 그 어느 때보다 양자 및 다자 외교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행동 주체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태환(2019)에 따르면 신 공공외교 “물리적 강제력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하지 않고 소프트 파워 또는 소셜네트워크 파워를 비롯한 새로운 관계의 힘을 사용하여 쌍방향적인 열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타 국민들을 이해하고, 자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타 국민들을 포용(engage)

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외교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오늘날의 공공외교는 문화·예술, 스포츠, 가치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지닌 매력을 통해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소프트파워를 추구하는 개념"이다⁸⁾. 즉, 상호의 존성이 심화되면서 다른 나라 대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는 일이 그 어떤 하드파워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김태환, 2019)

시대별로 보면 공공외교의 발전단계는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그리고 현재의 새로운 공공외교 등 3단계로 나뉜다. 밑에 있는 표1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21세기의 신 공공외교는 실행 주체, 대상, 자원과 자산, 매체 및 관계유형 소통의 양식 6가지 방면에서 과거의 전통외교와 많은 차이가 보인다. 신시대에 신 공공외교를 잘 활용하려면 각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공외교는 이제 단순히 정부만 주도하는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역할, 자국민의 힘을 홀시하지 못한다. 발달한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 가치관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매력을 가능한 많이 타국 대중에게 홍보하려 한다. 공공외교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⁸⁾ 김태환.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문화와정치』 6권 1호. pp.5-32.

외교의 요소	전통외교	20세기 공공외교	21세기 신공공외교
주체	정부	정부	정부와 다양한 민간주체
대상	상대국 정부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은 불포함)	상대국 정부 및 대중 (자국민도 포함)
자원과 자산	하드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매체	정부간 공식협상, 대화	선전, PR캠페인, 구미디어	인터넷, SNS 등 디지털 매체 등 다양화
관계유형	수평적 (정부간)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소통의 양식	Closed Negotiation	Closed Communication	Closed Communication

<표 1> 공공외교 소개-공공외교의 역사적 배경

자료: 외교부 공공외교 <http://www.mofa.go.kr>⁹⁾

2. 연구 목적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공공외교법을 일본, 미국, 프랑스의 공공외교법률들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2016년 한국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외교 분야에서 어떠한 제도적, 실천적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의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의 발전 현황을 연구하고 공공외교법 제정을 시도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단계의 한국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데

⁹⁾ 외교부 공공외교포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0.5.06)

목적이 있다. 지도적 역할이란 공공외교법 제정이 2016년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에 진정한 방향의 지도와 구체적 법률문서적 보장을 제공 하는지를 말한다. 공공외교법의 제정은 2016년 후의 공공외교 사업 발전 방향에 2016년 이후 신 공공외교가 구체적 분야에서 실천은 변화가 과연 있는지 공공외교법의 제1조 목적에 부합했음을 입증하려고 한다. 즉, 공공외교법의 실행은 과연 한국 공공외교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했는지가 연구의 목적이다.

3. 선행연구

한국은 1995, 96년경부터 공공외교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래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를 국외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와 국내 자체 공공외교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공외교 전반에 관한 기존 연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가 먼저 공공외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발국인 한국은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데 집중해 자국의 공공외교 사업 발전에 도움을 제공한다는 연구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연구는 김명섭·안혜경(2007)은 9.11 이후 미국 공공외교의 변화역사 연구가 있고, 우준모(2010)가 러시아의 공공외교를 연구하고 러시아 공공외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분석했다.

신진(2017)은 비교법으로 한미의 공공외교를 비교하면서 분석한국 공공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제출한다. 한국의 공공

외교의 목표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 중 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공외교 추진기구는 정부내에서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평가는 제 3자적 기구를 통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로써 공공외교에 투자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¹⁰⁾

또 이 분야에서는 각국 간 공공외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국제정치, 지역학 차원에서 공공외교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많은 문헌들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많은 일본과 중국의 공공외교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있다.

백우열(2015)은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을 분석하고 한중간 공공외교 교류 합의와 발전의 핵심적 정책 모토인 ‘인문교류’의 분석을 기반으로, 재중국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지방정부 간 교류; 중국 내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공공외교적 함의 및 대중국 통일 공공외교 4가지 사례를 분석한다.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 또는 조율하는 형태의 공공외교 전략은 그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을 파악하고 시도하는 단계라는 결론을 내린다.¹¹⁾ 예를 들어 한국 통일 공공외교, 지방정부 공공외교,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산 영향력과 공공외교 등이다.

Li Xi(2016)는 한국의 공공외교는 비록 유럽과 미국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발전이 신속하다며 이는 한국 자신의 전통적인 외교력

10) 신진. 2017. 「공공외교의 한·미간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5(4), pp.1-26.

11) 백우열. 2015.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90호. pp.115-142.

요소의 제한과 한국의 문화 입국 확립의 전략과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한국은 처음으로 대중국 관계를 대일 관계보다 중요시하기 시작했으며, 공공외교를 대중국 외교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삼았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는 대중국 공공외교 방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는 대중국 공공외교 방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학자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잘 이용하여 외교를 강화하고 그 대외 관계를 개선하며, 특히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은 다른 나라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외교에 관한 기존 연구:

한국 국내 공공외교 정책 자체의 연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역사학적인 시각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내용 변화에 대한 연구이다.

Zhang Yongzhe(2020)는 21세기 이래 한국 공공외교의 변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주로 전략적 수요와 산업적 수요, 정부조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변화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한국 대통령의 임기를 분류하여 기간별 한국 공공 외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고찰한다. 한국의 <공공외교법>에 중점적으로 주목하고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의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전체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국가 이미지 형성에 대한 의미를 총결산한다.

Fu Zhe(2019)는 냉전 이후 한국 공공외교의 기본 구조와 정책 체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발전과 전략적 진화의 맥락에서 시기별, 정부별로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분석했다. 국제정치와 대국 관계에서 공공외교의 일반적인 역할과 특수기능을 결합하고, 한국 공공외교의 전략적 실천과 전략을 모색하고, 한국 공공외교의 기본적 특성, 총체적 효과 및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추진방식과 구체적 방법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인 효율을 평가했다.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분야 내용도 연구되고 있다. 학자가 지적한 대로 한국은 현재 전염병사태에 입각하여, 위생 외교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했다(2020) ; 다른 연구에서 이 학자는 1993년 이후 한국군대가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위주로 군사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Fu Zhe(2018)는 한국은 구체적 분야의 공공외교가 정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소프트 파워를 키워 공공외교의 공간을 크게 넓혀줌으로써 정치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부분은 주로 미디어 전파 관점에서 한국 공공외교 사업의 발전 측면을 분석하며, 특히 문화 외교 사업이 국가 이미지 메이킹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세대 소프트 파워 전파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u Jin(2018)은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학자가 제시한 '국가 마케팅'이라는 이론에서 한류의 성공 사례를 들며 나라를 하나의 '브

랜드'로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가를 놓고 외교정책을 폈다. 한류 확산에서 한국 정부 역할과 전반적인 공공외교에서 한류의 역할을 논한다.

Zhang Qi(2017)는 연구에서 한국의 공공외교가 한국의 국제적 면모를 일신하고 국가 이미지를 회복해 교류와 정체성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공공외교가 늦어지고 뉴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의 글로벌 보급이 미흡하고 문화외교에 편중된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Zhu Ling(2014)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국가 이미지 메이킹 효과를 소개하며 먼저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공공외교와 국가 이미지는 변증통일의 관계라고 거명했다. 이어 한국의 메이저대회 개최, 문화외교 전개, 기업 외교, 국제기구에서의 표현, 원조외교 등 5가지 측면을 면밀히 분석해 한국의 공공외교가 국가 이미지 메이킹에 기여한 점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BBC의 국가 영향력에 관한 여론조사를 이용해 한국의 국가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Chen Yiru(2019)은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통자원이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분석한다. 조지프 나이의 소프트파워에 관한 이론을 주요 이론적 근거와 분석 도구로 삼아 한국이 어떻게 전통문화자원을 국가 이미지 형성의 유력한 도구로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국가 이미지 구축에 한국 전통문화자원이 활용될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초한 것으로, 목표 대중과 상호작용하는 문화전달의 형식을 통해 전통문화자원을 동화적인 소프트파워로 변화시키고 목표

대중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전달로써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문화인 한식 등을 국가 이미지에 녹여낸 국가이미지로 전통유교 사상과 현대문화를 접목하는 데 성공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부분은 주로 신공공외교 시대 하에 한국 공공외교 발전에 대한 토론과 현재 공공외교 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김태환(2015)은 21세기 새로운 공공외교의 부상에 맞춰 새로운 한국형 공공외교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정치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논의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이용하여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갈등을 가속화하기 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공공재를 창출하는 핵심 기제로 역할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학자가 신자유주의적-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공공외교의 특징을 중견국 형, 지식 공유형, 가공형-경쟁우위형, 경작모델형 및 참여형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향후 한국 공공외교가 주목해야 할 분야로서 지식 외교 및 독백과 대화를 넘어서는 ‘협력형 공공외교(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김태환,2019)¹²⁾

김태환(2015)은 공공외교를 진일보하여 연구하고 가치 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이념을 제시하며, 강대국 사례의 비교분석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을 지시했다. 그는 한국 공공외교의 가치 및 아이디어는 중립적 포용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평화’와 ‘공존’과 같이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동심원을 그리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12) 김태환. 2015. 「한국형 중견국 공공외교: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 (외교안보연구원)

바람직할 것이다.¹³⁾

그동안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중에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공공외교 전반에 대한 연구가 빈약하다. 법률이 제정된 지 얼마 안 돼 실천 효과와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공공외교법 자체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새로운 단계의 한국 공공외교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는 한인택을 꼽을 수 있다. 한인택(2016)은 법의 발효가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의 취약한 공공외교가 공공외교법 발효를 계기로 조직과 예산을 확충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 각국 국민의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⁴⁾ 공공외교법이 발효 후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는 의욕적인 공공외교, 즉 공공외교 2.0을 추진해볼 만하고 공공외교는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행위이지만, 상대방의 가슴과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감대를 찾아내고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예술'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¹⁵⁾

김용훈(2018)은 기존의 공공외교법의 미비점을 분석했다. 학자가 논문에서 법률 내용 중에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권리 규정이 없어 공공외교 정책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공공외교를 강화

13) 김태환.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문화와정치』 6권 1호. pp.5-32.

14) 한인택. 2016b. 「制定《公共外交法》的背景與意義」. 『성균중국관찰』 16권 0호 pp.76-79.

15) 한인택. 2016a.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 『JPI Research Series』 37호. pp.266-271.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영국의 경험 분석을 통해 더 실효적인 공공외교정책을 위해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제시한다. 영국은 주관 지원기관 → 실행 기관 → 평가 기관 등의 체계를 가지고 조화로운 공공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김용훈, 2018) 이 학자는 앞으로 공공외교법 제정이 영국 방식을 참고해 시행 주체의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제정자가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중시해 공공외교 법률을 보완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국의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공공외교 사업의 발전 현황과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공공외교법 제정이 향후 새로운 단계의 한국 공공외교 사업에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도이다. 공공외교는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참신하고 문화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 한국 공공외교 사업은 정확히 2010년부터 확립돼 있고, 공공외교법은 2016년 제정돼 2017년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제 3,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실천이 필요하다. 공공외교법의 효과를 최대한 해석 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평가하며, 향후 한국 공공외교법의 개선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주로 자료수집 분석방식과 사례 비교연구 방법을 이용해 해석주의 관점에서 해외 각국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공공외교법 및 사업

을 평가하고 더불어 일부 조사통계로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료수집 분석은 주로 법안과 공공외교 정책, 정부 공식 자료, 계획 문서 등 원문분석 방식으로 귀납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한국 공공외교 정책에 관련된 학자들의 기존연구, 외교부와 다른 정부 부문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예: <외교백서>, <2019 매력 한국> <2019 지구촌한류 현황>등) 그리고 외교부 공공외교 포털 사이트와 국제교류재단과 공식 웹 사이트 및 연도 보고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사례비교연구는 공공외교 분야의 이론에 근거하여 해외각국의(미국/일본/프랑스) 공공외교법률 각 조항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연구 진행하고 일반성 공통점 과 차이점을 탐구했다.

본론 부분에서는 네 가지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2016년 정식 출범해 이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외교법이다. 법안의 13개 조항에 관해 내용을 해석하고, 전체를 분류해 공공외교법의 특징과 출범의 의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료는 미국의 “스미스-몬트법(1948년 정보 및 교육 교류 법)”,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및 프랑스의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대한 2010년 7월 27일자법률” 원문이다. 세 번째 자료는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또 2018~2020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참고해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실천과정과 사업내용을 파악한다. 더불어 <외교백서>, 외교부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이용해 공공외교법이 주도하는 새로운 단계인 공공외교 사업 추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네 번째 자료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외국인에 대한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와 국가별 위상 지수 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공외교법 제정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분석한다.

우선, 구체적인 공공외교법의 조항을 분석해 조항의 종류를 분류하고, 향후 공공외교사업 제정 과정에서 이 법안의 방향과 의미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 종류별로 질적 측면, 운영 측면, 실행주체 측면,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한국 공공외교법의 특징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프랑스, 3국의 유사한 공공외교 법안을 분석한다.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법안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보면 법 제정 내용에 어떤 장점과 특색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법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공공외교법의 자체 장점과 내재적 문제점을 더 분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와 법률 설정 내용은 한국에게 향후 개정과 보완에 대한 참고 경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법을 분석한 뒤 한국 공공외교 실천의 구체적 현황을 조사한다. 2016년 제정된 공공외교법은 시점으로 구분해 이전과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전반의 추진실천 현황을 조사한다. 2016년 이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도하는 공공외교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한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공공외교법 자체의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공공외교법 출범 후의 결과와 효과를 더욱 면밀히 분석하면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인 제2차, 제3차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한 목표 정책 수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II 한국의 공공외교법

1. 공공외교 발전의 중요성

션 리오던(Shaun Riordan)은 21세기 외교는 점차 공공외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haun Riordan, 2004). 이유는 테러, 환경오염문제, 전염병, 금융위기 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라는 틀 안에서 정부·민간단체·개인 간의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¹⁶⁾ 공공외교는 전통외교에 비해 새로운 형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외교의 공식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고, 점점 더 많은 비국가적 행위 주체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면서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 대한 공공언론과 사회대중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정부도 대외전략 수립과 외교정책, 그리고 중대 외교 사안을 다룰 때 정부 행동이 초래할 사회적 나쁜 결과와 민중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¹⁷⁾ 공공외교의 발전은 이제 모든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 공공외교가 왜 확대하느냐를 놓고 보면 나라마다 공공외교를 발전시키는

¹⁶⁾ Shaun Riordan. 2004. "Dialogue-based public diplomacy: A new foreign policy paradigm In The new public diplomacy". pp. 180-195.

¹⁷⁾ 吴超. 2013. 「公共外交对中国和平崛起的意义分析」. 『理论探讨』第8期
<http://www.chinapda.org.cn/chn/xsdt/t1100407.htm>(검색일: 2020.4.17)

의미와 이점은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공공외교를 통해 국제 각국 국민의 눈에 비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전통외교의 한계와 결함을 보완하고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국제 이미지 구축: 전통외교 시대, 한 나라의 국제 이미지 구축은 하드파워에 크게 의존한다. 경제력, 군사력 강대국들은 자국 내 '주류 매체'를 이용해 '홍보'와 '광고'를 한다. 60년에 걸친 냉전 기간, 미소 자본주의 사회주의 양 진영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적국의 이미지를 폄하하고 자국 이미지를 더욱 고취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외교 시대에 전통적 의미의 '국제 프로파간다 질서'가 무너지고, 뉴미디어 시대가 새로운 공공외교의 시대를 만들고 있고, 모든 나라에 국제적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상 한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숭상하는 백의민족으로 살아왔다.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경제 군사 대국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약세적 위치에 속한다. 이런 열세적인 정치 배경 하에 한국의 문화는 세계 각국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의 발달로 세계 각국 국민이 타국의 문화를 보고 공공외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남 스타일" 노래가 유행하기 전에 수많은 서양 나라들은 동아시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¹⁸⁾ 그들의 모호한

18) 송정은. 2014. 「경제한류와 문화한류가 한국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역할 -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류비즈니스연구』, 1(1), pp.109-142.

개념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국의 인상이 더 깊었다. 공공외교는 한류 문화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기 시작했다. 한국 문화의 창조적이고 활발한 특징이 세계인들에게 보여지며 긍정적인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각국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 시키고 있다. 공공외교 시대의 도래는 세계 경제력과 정치력의 대결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와 맞물린다. 이제 새로운 대국 경쟁의 주전장일 뿐 아니라 많은 중소국은 국가 이미지의 부각이나 재구축을 통해 과거 약세였던 수동적인 운명을 바꿀 기회다.¹⁹⁾

국익 실현: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구축에 더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추구할 수 있다. 경제 글로벌화와 사회 정보화 속에서 국가마다 더 선명한 이미지로 세계 앞에 펼쳐지는 이미지 설정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과 장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결정을 짓는 것이다. 국제 이미지의 좋음과 나쁨은 타국 국민이 이 나라에 투자할지, 여행을 갈지, 이 나라의 상품을 구매할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한 나라에 좋은 국제적 이미지가 형성되면 더 많은 외국인이 이 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생활하고, 경제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²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더 많은 경제적 부와 인적자원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외교의 연쇄효과로 그 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 속도

19) 주미영. 2015. 「글로벌 신뢰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정치정보연구』18권2. PP. 31-58

20) 김동택. 2006. 「한류와 한국학 - 해외 한국학 현황과 지원방안」. 『역사비평』 PP.213-240.

와 질이 나아지고, 그 나라 국민의 생활 여건과 수준도 점점 향상된다. 이런 많은 성장은 결국 그 나라가 세계 경제와 정치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위상과 자원을 결정한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세가 있는 하드 파워를 지닌 대국은 물론, 대국 밖의 중견국과 약소 개발도상국도 시대 흐름을 무시할 수 없고,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공공외교를 더욱더 지혜롭게 발전시켜 시대 흐름에 영합함으로써 자국이 세계의 타국에 더욱 잘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공공외교 발전의 필요성

한인택(2016)은 지금 2.0 공공외교 시대에 한국의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국가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국익을 가져오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안보 측면: 우선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한국 현실 외교의 난제를 푸는 중요한 길이다. 오늘날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있는 한국은 강대국의 이익을 놓고 경쟁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기존 초강대국인 미국과 후발 개도국인 중국의 이데올로기와 이익의 대립은 불가피하게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전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미·중 무역전쟁 등 과거 역사를 보면 한국 외교는 피동적인 국면으로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봤다.²¹⁾ 중

²¹⁾ Jae Ho Chung. 2007.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Chapters 4 to 6, pp.29-74,138-158

국과 미국 외에도 한반도 주변에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갖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즐비하다. 시급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 한국은 공공 외교를 활용하여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여야 한다.²²⁾ 분단국가인 한국에 더욱 방치할 수 없는 안보 문제의 한 축이 바로 북한이다. 남한과 북한 간의 분단 문제는 강대국에 의해 크게 견제당하고 있지만, 당사국으로서 어떻게 하면 공공외교를 활용해 남북관계의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외교를 활용해 세계 각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내느냐가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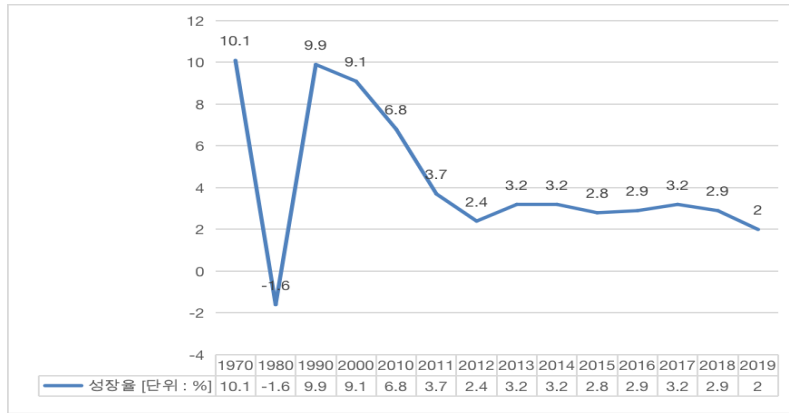
경제발전 측면: 박정희 시대의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경제는 전쟁 때 가난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아시아 경제의 4마리 용 중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다. 하지만 과도한 수출과 무역, 재벌경제 육성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안고 있던 한국 경제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고도성장의 단계를 지나 지속적인 성장이 날로 어려워진다.²⁴⁾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저출산 문제²⁵⁾도 심각해지고 성장동력 부족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2) 전병근. (201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0), 1-161.

23) 전병근. (201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0), 1-161.

24) 김동호. 2019. 『대통령 경제사』 서울: 하다(HadA)

25) 은기수. 2015. "인구와 가족: 가족의 인구학적 접근" 김혜경 등.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pp.54-91



<그림 3> 한국 경제성장률

자료: 통계청 KOSIS. 2019.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의 데이터²⁶⁾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체로 2.0~3.0%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저성장²⁷⁾ 시대에 진입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경제 발전의 난국을 타개하고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려면 공공외교가 최선의 정책임이 틀림없다.

경제 기능별로는 2000년대 초반 수출액이 5억 달러에 불과하던 문화산업이 2004년 한국경제의 제2의 버팀목으로 부상했다. 2013년

²⁶⁾ 통계청 KOSIS. 2019. 한국은행, 「국민계정」

²⁷⁾ 저성장: “일반적으로 저성장은 경제의 성장세가 과거 추세나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을 말한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성장의 체중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성장은 경제성장률의 추세적인 하락 현상이 지속되는 경제 상태를 말하며 투입 대비 산출, 즉 총요소생산성(TFP)이 감소하는 성장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범선. 2017. 저성장시대, 어떻게 연착륙 할 것인가? ① 저성장의 징후와 우리나라 저성장 기조의 특징

http://m.ufnews.co.kr/main/sub_news_detail.html?wr_id=4108(검색일:2020.8.30)

한국의 문화산업 수출액은 2000년에 비해 9배 늘어난 50억 달러였다. 2016년 문화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9.7% 늘어난 62억1113만 달러였다. 이번 성적표는 한국의 ‘문화 입국’²⁸⁾ 전략이 주효했다. 한류 문화의 홍보와 보급으로 한국의 문화 산업 경제가 대폭 성장하여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점이 될 수 있다.²⁹⁾ 공공외교를 발전 시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화산업경제는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다.³⁰⁾

공공외교의 추진에 어느 정도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원래 문화 및 가치관 차원의 외교 추진은 결과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고, 국제관계의 변화와 함께 정책 추진의 불안정성도 수반된다. 그러나 한국 같은 중견국에 대해서는 하드파워가 강한 대국보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기회를 잡아 한국이 대국과 대화하는 차원에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김태환, 2012)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다지고 국가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공공외교다. 총체적으로 보면

²⁸⁾ 상용 .2015. 『문화입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²⁹⁾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지구촌 한류현황 I(아시아,대양주)』 2019

한국에게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강대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서의 공공외교 새롭게 부상하는 ‘기회의 영역’이다.

2. 한국의 공공외교법

공공외교법의 출범은 오랜 한국 공공외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당연한 요구이자 결과였다. 법안은 공공외교 활동의 제정, 실시, 지지 및 피드백 메커니즘의 규제와 관련 기관의 설치와 자원 배치를 입법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공공외교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에 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공공외교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이다. 특히 당해 법률을 통하여 외교부는 단독으로 혹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과 다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³¹⁾ 특히 당해 법률은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통합적이고 나아가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평가받고 있다.³²⁾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한국은 공공외교의 지평을 한 단계 발전 시켜 외교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의 보장이다.

³¹⁾ 외교부. 2016. 「공공외교 제도개선 및하위법령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³²⁾ 한인택. 2016c.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JPI 정책포럼』 제187호, (제주평화연구원) PP.2.

1) 공공외교법의 내용 분석

내용을 보면 공공외교법은 총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법률상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정의, 목적, 원칙을 소개하고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 과정에서의 부분별 시행 주체와 주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연동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13개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로 3가지 정의, 책무, 실천으로 분류된다. 다음에 각 부분 법안의 핵심 내용을 한층 더 상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10조(실태조사)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국회 보고)
실천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표 2> 공공외교법 조항 분류

자료: 저자 제작

첫 번째 부분은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목적, 그 자체의 정의와 운영의 기본 원칙,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단계인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부분이다.

제1조(목적) ³³⁾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을 보면 공공외교법은 기존의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위상 제고의 향상을 촉진하고,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공공외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발전의 물결을 따라잡고 공공외교의 중요

³³⁾공공외교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1호, 2016. 2. 3. 제정]
<https://www.law.go.kr/>

성을 인식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기존 공공외교 사업의 강화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은 공공외교에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³⁴⁾

제2조 정의에서는 공공외교 분야의 사업 유형은 문화, 지식 및 정책 세 가지 명확히 분류된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현대 신 공공외교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소통을 촉진시키고 잇는 것이다.³⁵⁾ 세 번째 원칙은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이 세계 각국을 향해 통일적이고 평등한 원칙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지속가능한 우호 협력 증진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제1부분에서는 공공외교를 중시하고 새로운 시대 조건에 따른 새로운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그 방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비전,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에는 공공외교 사업 중 국가와 외교부 장관 등의 직책별 임무 소개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부분에 국가의 책임 의무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조한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외교에 대한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의 권력을 임명하며 그리고 정부의 매년 국회에 보

³⁴⁾ 외교부 박송희·한정연.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한다”
<https://blog.naver.com/mofakr/220783221164> (검색일: 2020.08.26)

³⁵⁾위의 글과 같음

고할 직책을 지적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국가 책무 설치에 대한 명확성이다. 우선 여러 차례 '효율성' 이 단어가 나타나 국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통해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을 강조한다.³⁶⁾ 공공외교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공공외교에 더 높은 기준과 요구가 있

³⁶⁾ 张永喆. 2020. 「21世纪以来韩国公共外交发展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음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국가가 지방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구축하고 재정과 행정 부분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9조는 더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자세히 소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의식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설정한 뒤 이제 공공외교라는 이념을 민심에 본격적으로 불어 넣으려 한다. 신 공공외교 시대의 주체는 전통외교의 국가 위주에서 비정부기구, 민중 등 각종 민간단체로 확대됐다. 국가는 총체적인 전략정책을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인에게 한국문화 가치관의 홍보 촉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야만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이 최종적으로 정착돼 공공외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제3부분은 혁신 분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외교법 시행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언급한다. 그중에 두 가지 계획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을 세워야 할 실천과 공공외교위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실천을 명확하게 지명한다. 이 부분은 2016년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발전을 위해 보다 명확한 비전과 요구를 담고 있다.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는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이 소속으로 공공위원회를 설립하는 규정을 내린다. 외교부 장관의 지도하에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변경, 추진 및 공공외교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책임진다. 위원회 발족으로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 전개를 감독하는 기관이 생겼고, 공공외교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사업 부문이 아니다. 각 부처가 공공외교를 상대로 교차 운영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계기로 분산

추진되어 비효율적으로 공공외교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한국 공공외교의 현실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수행된다. 공공외교법에 따라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는 공공외교 추진 주무 부처로서, 범정부적 · 범국민적 공공외교 역량 결집을 통한 통합적 · 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업무 총괄하는 다음에 위원회는 공공외교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총괄하고, 과정의 추진 및 최종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학계, 시민사회, 기업 등) 수행 주체가 공공외교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추진한다.³⁷⁾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³⁷⁾ 외교부.2017. 『공공외교안내서』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조와 제7조는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내

용이다. 설립 하는 공공외교위원회의 지도하에 매년 해당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은 향후의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데에 동력을 준다. 문화외교와 관련된 모든 행사 및 활동은 계기별로 산발적 혹은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³⁸⁾. 문화외교의 수행체제 정비는 중장기적인 과제다.³⁹⁾ 장기적인 계획과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며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 5년마다 외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실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5년 동안의 임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지방장관들이 매년 외교부 장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매년 시행에 차질을 빚고 사회발전을 파악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정책 규제는 제도와 조직 정비의 차원에서 공공외교 정책의 일관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마다 교체되는 선거로, 같은 정부 임기 동안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38) 외교부 박송희·한정연.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한다”
<https://blog.naver.com/mofakr/220783221164> (검색일: 2020.08.26)

39) 외교통상부. 2010. 『문화외교 메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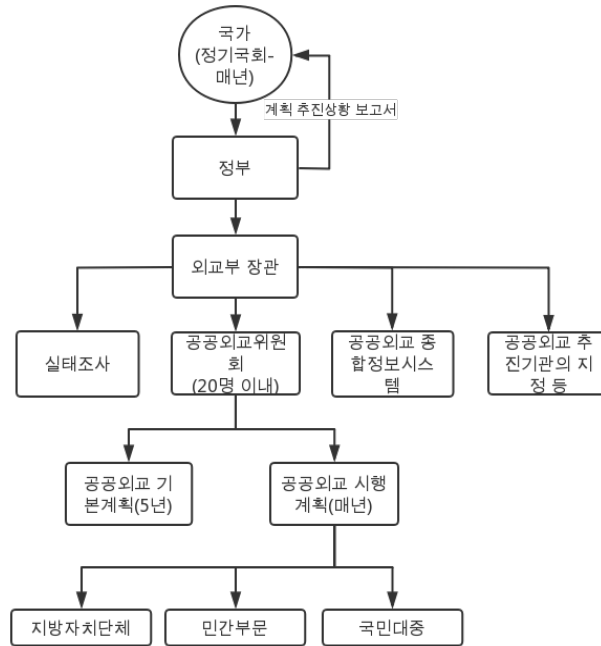
도지사와의 토론을 통해 수립된 정책계획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공공외교법의 특징 분석

(1) 질적 측면:

공공외교의 수준 향상과 효율성 향상을 강조한다. (張永喆, 2020) '유효성'이라는 표현은 공공외교 법안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해 제1조, 4조, 11조 등 조항에서 여러 차례 나타난다. 공공외교는 2010년에 공공 외교의 원년으로 확립한 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최대한 공공외교 사업을 지지하고 이미 많은 분야에 대해 크게 투자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공공외교 법안 제정과 출범은 현재 번성하고 있는 공공외교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더 수정하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부처 직책의 모호함, 재정자원의 낭비, 회색지대 형성, 계획의 난항, 공공외교 사업의 성과 측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유효성을 강조한 것은 공공외교 시스템 정책을 계속 최적화해 공공외교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다른 부분인 업무 설정과 책임 구분도 같은 목표로 설치한 것이다. 공공외교위원회 설치, 연도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공공외교 종합정보체계 운영, 외교부 장관이 가진 실태조사, 공공외교 추진기관 지정,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주체의 역할분담, 권한 분담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화 운영을 촉진한다. 공공외교법 제정의 의의 중 하나는 국내 행위자 간에 벌어졌던 공공외교 수행체계의 수립과 주도에 대한 논의와 경쟁이 공공외교법의 제정으로 일단락된 것이다.⁴⁰⁾



<그림 3> 공공외교법에 따른 공공외교사업 운영 순서도

자료: 저자 제작

(2) 운영 측면:

제도와 정책의 구체적 측면은 물론 계획 설정과 운영 과정에서 공공

40) 한인택. 2016a.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JPI Research Series』37호. pp.266-271.

외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공공외교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제작한 공공외교 운영 순서도를 보면 전체 운영 시스템은 위에서 아래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선 국가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공공외교의 각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제정, 행정 지원 내용을 상술한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공공외교의 여러 측면을 총괄하고, 공공외교위원회 운영과 연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공공외교 종합정보체계 운영 등 다양한 권리 의무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 국민은 구체적인 업무를 실행하게 될 수 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원활한 운영 방식으로 한국의 공공외교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외교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공공외교 사업 실행 주체 측면:

새로운 공공외교 시대를 배경으로 공공의 힘을 강조하고 국가 '공중'(Public)의 힘을 강조한다. 제4조에서 국가를 명시적으로 거명하는 책무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대폭 지원한다. 제9조에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공공외교 시대 배경하에 공공외교법 실행 주체의 확대와 공공외교 내적인 본질 변화를 더욱 강조하고 법률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민의 역할 및 권한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소통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⁴¹⁾

3. 미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외교법의 내용과 특징

이어서 미국 프랑스 일본의 공공 외교 정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한다. 미국 일본 미국 프랑스 3국의 공공외교 법 제정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국 공공외교법의 특색을 파악하고 현재 법의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수 있는지 피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미국에 이어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률적 차원에서 공공외교 관련된 법을 만든 나라는 드물다. 공공 외교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공공외교법과 비교할 수 있는 법은 주로 미국의 ‘스미스-몬트법’,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프랑스의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등 몇 개만 있다.

1) 미국: 스미스-몬트법(1948년 정보 및 교육 교류 법)

미국의 외교전쟁 정책은 공공외교가 홍보 수단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어젠다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냉전시대에 미국의 공공외교는 점점 성숙해지고 강화되었다.⁴²⁾ 반세기 넘게 이어진 미국의 공공외

41) 김용훈. 2018. 「실효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法學論叢』제25집 제2호 PP.167-205

42) 廖宏斌. 2009. 「公共外交：国际经验与启示」. 『当代世界与社会主义』

교를 보면 카터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때 약화된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역대 정부는 공공외교를 중시해 공공외교의 이념, 조직체제, 운영방식, 방법의 이용 등을 보완하는 등 자국적 특색을 살려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43) 1948년과 1961년 미국 정부는 '정보 및 교육교류법(일명 스미스-몬트법)', '푸브라이트-헤이즈 법안'을 제정해 공공외교의 작동 절차, 취지의 임무, 규제를 확립했고, 미국 정부의 공공외교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44) 최초의 공공외교를 펼친 미국은 역대 정부 내내 공공외교를 중시하고 자국 특색의 공공외교 모델을 형성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미국의 공공외교 법률 제정 전반에 걸쳐 미국의 공공외교 분야 법률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한미 양국의 공공외교 관련법의 특성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공공외교법이 더욱 개선되고 향후 한국의 공공외교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스미스-몬트법 내용분석

스미스-몬트법 총 10부 36개 조항은 총칙, 인적지식기술 교류, 전문가 파견, 정부기관 참여 총칙, 미국 정보의 외부 전파, 자문위원회 관련 정책, 지출총칙, 관리절차(국무장관과 정부기관), 기타 출처 자금 제공, 개인 충성도 점검 등 내용이다. 이 법률의 다년간의 시행 효용, 각계 인

43) 赵磊 幸尧 杜飞阳. 2013. 「世界变迁中的软实力建设」. 『学习时报』

44) 辛兆义. 2015. 「史密斯-蒙特法及其修正案研究」.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사의 중시 정도, 각 규정의 분류 등 각 방면의 관점에서 5가지로 나눌 수 있다⁴⁵⁾.

I . Short Title, Objectives, and Definitions
II . Interchange of Persons, Knowledge and Skills
III . Assignment of Specialists
IV . Participation by Government Agencies
V .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Abroad
VI . Advisory Commissions to Formulate Policies
VII . Appropriations
VIII . Administrative Procedures
IX . Funds Provided by Other Sources
X . Miscellaneous

<표 3> The 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입법 목표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입법 목표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정보활동의 정의는 미국국가와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전파하는 것이고 국회, 대통령, 국무장관 및 기타 대외업무 종사자의 정책 발표이며 교육교류활동은 인적지식기술교류 기술서비스 교육예술과학 분야의 발전된 교류 등

⁴⁵⁾ 스미스-몬트법/1948년 미국 정보와 교육 교류 Smith-Mundt Act/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https://www.usagm.gov/who-we-are/oversight/legislation/smith-mundt/>

3가지로 구성된다.

국무장관 권한 부여에 관하여: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대외 정보교육문화 교류에 관한 국무장관의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⁴⁶⁾ 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대표해 호혜적인 기초에서 학생, 수훈자, 교사, 석좌교수, 교수, 그리고 전문지식이나 기술분야의 지도자들과 교류할 권리가 있다. 국무장관이 학교 도서관 해외 활동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미국인이 후원하고, 정부 출판물, 저서 번역, 기타 교육자료 준비과정 등의 권한이 있다. 국무장관이 미국을 대표해 정보교육 교류활동을 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때 대통령이 승인하면 다른 나라의 각종 서비스와 시설, 그 나라의 정부기관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장관은 본 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수단은 청구하거나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대외 정보 교육과 문화 활동의 경로와 수단에 관하여:

이 법률은 미국의 대외 정보, 교육 및 문화 기구가 다양한 수단과 경로를 통해 미국 정보를 외국에 전파하다는 것을 규정한다. 미국, 미국 국민, 미국 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전파하는 것이 적절할 때 국무장관이 언론출판물, 방송, 애니메이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파

⁴⁶⁾ 作者未知, 李丹编译. 2013. 「公共外交纳入美国《2013年国防授权法案》」. 『南加大公共外交研究中心』 [http://uscpublicdiplomacy.org/index.php/about/cpd_news_detail/2013_national_defense_authorization_act_includes_important_pd_components/](http://uscpublicdiplomacy.org/index.php/about/cpd_news_detail/2013_national_defense_authorization_act_includes_important_components/)(검색일: 2020.12.15)

하고 정보센터와 해외 지도자를 통해 이를 외부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비슷한 기사나 라디오 텍스트는 국무부에서 국회의원이 영어버전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원회 두 개 구성에 관하여:

그 법률은 미국 자문위원회(United states asvisory commission on information)와 미국교육교류자문위원회(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 on educational exchange)를 성립시키기로 결정했다. 두 자문위는 분기별로 한 번씩 국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반기별로 한 번씩 모든 항목과 행동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은 어떤 프로젝트의 효과, 국무장관에게 본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그리고 필요한 행동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된다.

정부의 대외 정보,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개인기관의 참여 장려에 관하여:

본 법 조항의 집행은 국무장관의 직책이어야 하며, 개인기관의 서비스와 시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구체적으로 미국의 언론, 출판물, 라디오, 애니메이션, 기타 다른 기관들이 있다. 국회의 뜻에 따라 국무장관이 사기관을 본법 목표의 분야별 집행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것도 본국은 다른 나라의 기존 잠재시장의 이익과 부합한다.

(2) 내용 특성 분석:

첫째, 스미스-몬트법이 정한 입법의 행동목표는 미국인과 세계 다른

나라 국민 사이의 더 나은 이해와 국제관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⁴⁷⁾ 여러 해 동안 미국의 공공외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공식 문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술은 대외 교류와 정보 전달, 교육 교류 과정의 기본 목표가 되었으며, 총체적으로 이러한 목표는 실현되었다. 이 법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은 대체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우선 미국의 대외 정보 및 교육 교류 활동의 목표가 적합하다는 설명과 함께 미 공공외교에서 이 법의 위상과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개정 목표 아래 후속 개정안들이 잇따라 제출된다는 것은 스미스-몬트법의 결함을 계속 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이 법은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외 정보와 교육 교류에서 절대적인 지도와 지배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대외정보교육문화교류 활동에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직접적 리더십이 거의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까지 공공정보위원회, 문화관계처, 미주문화처, 미주국가사무국, 전시정보처, 중앙정보국 등이 등장했지만 짧은 기간과 주로 전쟁을 위해 복무했다. 법의 뒷받침 및 고정된 리더십도 없이 대세를 장악하면서 미국의 대외 정보문화 교류는 한때 혼란스럽기만 했다. 1948년 스미스-몬트법 공포 이후까지 미국의 대외정보와 교육문화 교류는 국무장관에게 정식으로 전권을 위임했다. 1953년 설립 때까지 대외문화에 관한 국무장관을 약화시켰고, 1961년 교육과 문화 상호

47) 卢暄, 何丹. 2016. 「西方国家公共外交实践之现状分析-以美国、以色列和法国为例」. 『牡丹江大学学报』.第25卷, 第7期. pp.115-117

교류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국무장관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귀속시켰다.

셋째, 이 법 501조에 규정된 미국의 대외 정보와 교육 교류의 내용이 미국 내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한 문제는 최초 법안에는 없지만 미국 내에서 중요한 민감한 쟁점이 돼 많은 국가와 학계의 반발을 초래한다.

넷째, 두 개의 자문위원회 설치를 확정함으로써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미국의 감시와 검열 성격의 자문위원회 설치 전통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대외 정보 및 교육교류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의 큰 정부기관들이 거의 다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런 위원회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감독, 검사, 보고, 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기관의 각종 자문위원회 구성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인력 구성에 많은 정부 부문의 자문기구가 정부 고위 관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스미스-몬트법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엘리트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이 시민적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둔다. 이들 자문위원들은 매년 대통령, 국회 또는 한 주정부에 연간 또는 반기보고를 하고, 보고는 참고할 만한 지도와 의견이 있다. 보고 내용은 이후 각종 국가적 행위에서 실천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미국의 공공외교 활동은 정부 정책과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조직과 개인의 행위에 참여하는 두 트랙으로 이뤄져 왔다. 한편으론 미디어와 정보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소리 등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인상을 효과

적으로 전달하고 자유로운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의 전략적인 조치다. 방송으로 수백만의 사람에게 미국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달하고 미국 언론사가 발행하는 잡지를 십수 개 언어로 출판하고, 책과 영화를 배포하고, 연구 관점을 총결하고, 예술 전시를 후원하는 전략적인 조치를 통해 여론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와 교육교류, 혹은 시민에게 스카우트 하는 것, 가장 좋은 예증은 누구나 알고 있는 풀브라이트 프로젝트(Fulbright Program), 그리고 1965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한 자매도시 프로젝트이다.

(3) 스미스-몬트법과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

미국 공공외교 분야의 첫 입법인 스미스-몬트법은 지금까지도 미국 대외정보교육문화 교류의 기본 지도 원칙이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 1956년 3개 개정안이 나왔고, 1961년 ‘교육과 문화 상호교류법’은 일명 ‘풀브라이트-하이스법’으로 불리며, 미국의 공공외교 활동에서 스미스-몬트법에 버금가는 중요한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엄밀히 말해 스미스-몬트법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입법이 있었지만, 스미스-몬트법 일부의 내통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풀브라이트-하이스법은 스미스-몬트법의 중요한 보완이다. 이어 ‘1972~2012년 대외관계수권법’, ‘1986~87년 대외관계수권법’, ‘1990~91년 대외관계수권법’, ‘2012년 스미스-몬트현대법’ 등 네

차례의 개정안이 다시 나왔다. 1956년 '1948년 정보 및 교육교류법 개정안'과 '1961년 교육과 문화상호교류법'은 주로 미국 방문학자가 미국을 떠난 지 2년이 지나야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1961년 교육과 문화상호교류법'은 미국의 대외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권리를 재규정하였다. 그러나 스미스-몬트법은 미국이 해외에서 알리는 정보가 미국 내에서 전파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언론계, 국회의원 등만 알 수 있을 뿐 미국 내 전파 가능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데 미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72년 대외관계수권법의 스미스-몬트법 개정은 이 법의 여러 수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정이다. 미 정치권은 그동안 스미스-몬트법을 중시해 왔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앨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스미스-몬트법을 "혁명적 결정의 하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대외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미 공공외교의 모범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스미스-몬트법과 관련 개정안이 미국의 공공외교 발전에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법은 시대 변화 과정에서 미국의 공공외교 사업에서 권력 주체와 목표의 변화를 반영한다. 미국의 공공외교 권력 주체는 국무장관에게서 대통령으로 전통외교에서 공공외교로의 전환, 그리고 외교목표의 반공에서 반테러로 바뀌었다. 둘째, 교육과 문화교류가 미국 공공외교의 주류라는 것을 법으로 정립했다. 셋째, 스미스-몬트법과 그 개정안은 국

가 문화외교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였다.

2)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2014년6월13일 법률 제67호)

1990년대 중반 국제 사회의 글로벌화 시대 배경하에 일본은 본국의 문화를 정의하려고 하고 선진 민주국가에서 보다 책임 있고 성숙한 동반자적 이미지를 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일본의 공공 외교 분야가 주요 해외 뉴스와 국제 문화 교류 두 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일본 공공 외교는 미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의 특징을 보였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기금회”를 통해 성 내에서 독립 행정 법인 형식으로 공공 외교를 추진한다. 지방 정부 및 기타 사조직도 공공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국제교류 기금은 공공 외교 사업 보급의 가장 주요한 행위 주체다. 그것은 일본 유일의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종합적인 조직이고 전체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다. 국제 교류 기금은 1972년 10월 2일에 설치되고 2003년 10월 1일 독립 행정 법인이 되고 지금까지 40여년의 공공외교 보급을 진행했다. 일본 국제 교류 기금은 일본공공외교의 해외 보급을 위해 뛰어난 기여를 한 공공외교 최전선에서 공공 외교 국제화의 실천자다. 자체 제도적 성격과 사업 목적의 공익성을 활용하고 언어 진흥과 문화 지식 교류, 과학 조직 관리, 글로벌 시사 배치,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도입을 결합하여 일본의 공공 외교를 적

극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은 명확한 공공 외교 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표 행정 기관 “국제 교류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한 재정적 제한에 초점을 맞춘 "독립 행정법 인 국제 교류 기금법"이 있다.

내용 특성 분석:

국제 교류 기금은 '독립 행정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조하고 공공 외교를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색을 희석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⁴⁸⁾ 공공외교의 국제화 과정에서 국제교류기금은 기관 성격의 공익성과 사업 취지의 공익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기관성격은 '독립 행정 법인 국제 교류 기금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 교류 기금의 전칭은 독립 행정 법인 국제 교류 기금이기 때문에 국가교류기금은 독립행정법인 자격이 있다. 일본의 독립 행정 법인 제도는 새로운 공공 관리 풍조 하의 산물이다. 이에 발맞춰 독립행정법인 조직의 취지도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 행정 법인 국제 교류 기금 법 제3조를 적용해 '국제 교류 기금의 목적은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외국인 국제 협력 증진이다. 일본을 위해 상호 이해의 발전과 대외 관계를 유지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독립행정법

⁴⁸⁾ 成蘊. 2020. 「冷战后日本公共外交运作模式」. 『公外世界理论版』. pp. 47-48

인 국제교류기금은 기관인 '독립행정법인'을 통해 자신의 정부 배경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정치색깔을 희석시켜 사업이나 사무의 공공성, 자주성, 투명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외 공공외교의 확산과정에서 대상국 사회대중의 이해를 얻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교류기금에는 감사 부문이 설치되어 있어 공공외교의 대중화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리하다. 국제 교류 기금은 이사회제를 실행한다. 그 본부는 도쿄에 있고, 지부는 교토에 있으며, 다른 두 부속이(일본 어글로벌센터와 간사이 국제 센터)있고 약간의 글로벌 센터 해외 사무소도 있다. 실무 그룹특히 국제교류기금에는 이사와 병행해 감사를 두고 있으며 재단의 재무상태 및 직무수행 상황 등을 감사하고 있다. 본부에는 감찰실도 있고 이 같은 감사시스템의 설치는 권력주체의 존재에 대한 방지와 함께 업무 전개 효과를 평가해 국제교류기금의 공공외교 국제보급 과정에서의 각종 행위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교류기금본은 공공외교 사업의 민간화로 전환을 추진한다.⁴⁹⁾ 기금의 설립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은 어떤 정도인 공공외교 민간화가 된다는 문제에 대한 태도는: " 일본의 국제 문화 교류 사업이 전적으로 민간한테 맡기면 안 되고 정부 기관. 주도를 통해 민간을 유도해 국가의 국제문화 정책 방향을 따라하도록 한다. 대외문화사업에서 외무성의 이런 태도는 기금이 진보적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불완전한 일면을 내포하

49) 杨峻. 2020. 「日本国际交流基金语言推广的实施情况调查研究」.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53卷,第2期. pp.55-61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립은 일본 외교 전후 체제가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화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일본 문화 외교의 민간화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상징한다. 기금의 향후 발전 추이를 보면 여전히 민간 색채 강화가 큰 추세다. 이 가운데 2003년 기금이 정부주관 특수법인에서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금은 민간화의 길을 한 걸음 더 걷게 됐다.

平成十四年法律第百三十七号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⁵⁰⁾

<p>第一章 総則</p>	<p>第一条 (目的) 第二条 (名称) 第三条 (基金の目的) 第三条の二 (中期目標管理法人) 第四条 (事務所) 第五条 (資本金) 第六条 (名称の使用制限)</p>
<p>第二章 役員及び職員</p>	<p>第七条 (役員) 第八条 (理事の職務及び権限等) 第九条 (理事の任期) 第十条 (役員及び職員の秘密保持義務) 第十一条 (役員及び職員の地位)</p>
<p>第三章 業務等</p>	<p>第十二条 (業務の範囲) 第十三条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の準用) 第十四条 (積立金の処分) 第十五条 (運用資金) 第十六条 (運用資金の運用)</p>

⁵⁰⁾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 平成十四年法律第百三十
<https://www.jpf.go.jp/j/about/admin/guide/kikinhou.html>

第四章 雜則	第十七条 (緊急の必要がある場合の外務大臣の要求) 第十八条 (財務大臣との協議) 第十九条 (主務大臣等) 第二十条第二十一条削除 (国家公務員宿舎法の適用除外)
第五章 罰則	第二十二條 第二十三條 第二十四條

<표 4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2014년6월13일 법률 제67호)

3)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프랑스의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은 공공 외교 전반에 대한 정의보다는 공공외교 집행기구에 대한 관련 법률정책 수립에 가깝다. 이 법의 골자는 외교유럽부가 관련 활동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외교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재정기반을 보장하는 것이다.

외교와 유럽부가 관할하는 국가별 프랑스 문화센터를 프랑스 학회 (InstitutFrançais)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캄보디아 인도 쿠웨이트 세네갈 세르비아 싱가포르 덴마크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시리아 조지아 가나 영국을 대상으로 한 3년 실험방법(적정도 실험)에 기초한 것이다. 실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면 세계 모든 문화센터는 외교부가 아닌 프랑스 학원으로 바뀌지만 현 체계는 외교부 장관이 유지하기로 했다. 2010년 공포된 국가대외활동법은 주로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문화외교와 관련된 직접법규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캠퍼스, 프랑스문화센터, 프랑스의 국제기술감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 밖에

국제기술감정국(2절), 배우자 진첩(3절), 해외원조활동(4절) 등도 규정했다.프랑스의 대외활동에 기여한 영조물은 해외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의 문화활동,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조).이들 기구의 조직과 기능은 Conseil d'État 법령에 의해 결정되며 이사회가 관리한다. 프랑스 캠퍼스는 외교와 고등교육부에 속해 있으며 프랑스에서 고등교육을 촉진하고 촉진하는 공공기관이다.

(loi n° 2010-873 du 27 juillet 2010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⁵¹⁾

제1절	프랑스의 대외활동에 기여하는 영조물법인 관련 규정(조항 1~12) I. 일반규정 (조항 1~5) II. 캠퍼스 프랑스 (조항 6~8) III. 프랑스 문화원 (조항 10~11) IV. 프랑스 국제기술감정 (조항 12)
제2절	국제기술감정국 관련 규정 (조항 14~20)
제3절	배우자 수당 (조항 21)
제4절	해외 원조활동 관련 규정 (조항 22~23)

<표 5 >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자료: 외교부.2016. 『공공외교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제정 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⁵¹⁾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LOI n° 2010-873 du 27 juillet 2010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22521532/2020-12-20/>

내용 특성 분석:

이 법에서는 2018년 개정된 2장: 프랑스 캠퍼스 공공장소(6~8조), 3장: 프랑스연구소(9~11조)와 4장: 국제특허경영전문기술(12조)이 색다른 특징이 보인다. 6조에 따라 “프랑스 캠퍼스'라는 이름의 공공공업 및 상업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구는 외교부 장관과 고등교육 담당 장관이 공동으로 감독하고 제1장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였다.” 9조는 '대외문화행동을 위한 공공경영기관을 설립하여 프랑스연구소로 불리며 외교대신과 문화담당대신의 공동 감독하에 제1장을 준수한다'고 했으며, 제12조는 '프랑스국제기술전담기구'라는 명칭으로 외교부 장관과 경제담당 장관이 감독하고 제1장에서 제1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세 기구는 대외 공공외교 사업의 주요 역량과 세 가지 면에서 '교육' '문화' '기술'로 구분돼 있다.

공공기관인 프랑스캠퍼스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의 보급 촉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친 외국국민의 프랑스 교육시스템 또는 해외 프랑스 교육네트워크에서의 수업, 외국인 학생 및 연구자 응대, 비자 발급과 숙박 지원, 대학, 학교, 기타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및 커뮤니티 영토 지원,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보조금, 인턴 및 기타 국제 유동성 프로그램 지원, 통과" 등의 임무를 갖고 있다.

공공기관인 프랑스 캠퍼스는 외교부 장관과 고등교육 담당 장관이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해외 외교 네트워크의 표현

육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제 및 유럽 기구, 지방 당국, 대학, 학교 및 기타 관련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및 조직과 공공 및 사적 협력 파트너와 협력한다.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외교사절단장 아래 외국에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권으로 또는 관례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연계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호소한다. 제7조는 프랑스에 있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배치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는 국립대학과 학교업무센터의 모든 국제행사를 프랑스 캠퍼스 공공장소에 포함시키는데, 이 활동과 관련된 재산과 권리와 의무는 법에 따라 공공 기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며, 세금이나 관세 또는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프랑스 연구소의 임무는 외국에서의 프랑스 문화 촉진 및 지원 유럽, 프랑스어 및 외국 문화와의 교류 발전 남방에서 예술표현 형식을 창작, 발전 및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랑스와 국외에서 이러한 예술표현 형식을 보급하고 전파할 것 이들 분야의 주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영화와 시청각 유산을 전파할 것 국외에서 프랑스의 사상, 지식, 과학 문화를 촉진 및 지원할 것 외국에서의 저작, 작품과 저자, 특히 프랑스어를 널리 전파할 것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이 연구소는 이들의 채용, 배치, 관리 작업에 참여했다. 프랑스연구소는 외교부 장관과 문화담당 장관이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외교사절단장 아래 외국에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직권으로 또는 관례에 따라 외교사절단과 연계하는 기구를 만들 것

을 호소한다. 프랑스 연구소는 문화 네트워크의 애니메이션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의 해외 문화기구 활동을 프로그래밍하고 문화네트워크의 대리인을 임명하고 평가하며 이 네트워크의 가용 인력, 재무와 부동산 자원의 배분 및 배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프랑스 국제기술전문기구는 기술지원과 외국에서의 국제공공 전문지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국제기술전문기관의 발전과 양자 및 다자간 자본을 활용한 협력프로그램의 사업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프랑스가 성장과 경제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협력하는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그 행동을 천명한 것이다. 국가가 정한 전략 방향의 틀 안에서 관여하는 것이다. 전문 지식과 국제 유동 방면에 있어서 국제기술전문기구가 주관사조직의 사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공공 또는 개인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한다. 공공 전문가를 공급하거나 차출하기 위해 관계 부처나 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그 조직과 운영방법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비교: 한국의 공공외교법에서 나타나는 특징

미국의 스미스-몬트법, 일본의 독립 행정 법인 국제 교류 기금 법 및 프랑스의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 년 7 월 27 일자 법률의 사례 비교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공공 외교 분야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입법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공공외교법을 이들 3국 법안과 비교해 볼 때 한국 공공외교법의 특징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

분이 두드러진다.

한국 공공외교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 시대의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지도와 법률적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공공외교 사업을 들여다보면 일부 선진국이 한국보다 공공외교를 먼저 중시하고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업 추진도가 훨씬 뛰어나고 경험이 많다. 그러나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 발전에 대해 명확한 법적 문헌 규정을 제시한 나라는 드물다.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 미국만 공공외교 발전의 시발국으로서 70여 년 가까이 끊임없이 탐색하고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법적인 측면만 치중한 국제 교류 기금을 보완하고 법률은 단지 조직의 행정적과 재정적 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공공 외교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제정 기초 보장에 관련 법안에 가깝다. 공공외교법은 한국이 공공외교 전반의 발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일본과 프랑스와 유사한 점은 90년대 한국의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을 출범시킬 때 해당 법'국제교류재단법'도 제출된다.

2010년 공공외교 원년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일찍 출발하지 못한 한국이 여러 나라보다 앞서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발효하기 시작했다. 공공외교 발전을 지도하는 공공외교법으로 한국이 미래 공공외교에 대한 야망과 전략적 비전을 보여준다. 2016년 2월 공포된 공공외교법은 한국 외교사 전후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중요한 이정표이다. 정부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입법 이전의 공공외교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전통외교사에서 공공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최근에야 주목을 끌기 시작했을 뿐이다. 공공외교법은 여전히 법적으로 첫 걸음 시작 단계다.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그 자체로 앞으로 대한민국 공공외교 사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한 지도와 규정을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법 내용이나 사업체질 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의 공공외교 법률을 비교하면 2016년에 공포한 한국 공공외교법은 지난 60, 70년간 꾸준히 보완해 온 미국 공공외교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만 놓고 보면 공공외교법은 13개 조항에 불과하고, 공공외교 목표 주제에 대한 운영체제 설치에 대체적인 규정과 정의가 있지만 구체적 사업 내용은 여전히 빈약하다. 사업 유형이 불분명하고 사업주체의 참여, 프로세스를 강조하지만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어느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전체 공공외교 사업은 문화, 지식, 정책의 3대 부분 내용으로 나누는 것을 언급하지만 세부 규정이 부족해서 공공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복과 충돌이 빚어지기 쉽다.

미국은 법에서 구체적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201,202,203,301 조항에는 인원과 각 학교 단위, 책과 자료 등에 대한 지식, 전문가 파견 기술 교류 등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고 국무장관이 이 업무에 대한 주권을 강조한다. 401,402, 403 조항에는 정부 기관의 참여 총칙, 정부 기관의 서비스 정책 및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법 4조는 국가 책임에 대해, 신설되는 공공외교위원회와 외교부 장관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스미스-몬트법에 비해 구체적으로 문화사업, 기술교류 종류와 주체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스미스-몬트법과 한국의 공공외교법이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법이 완전한 미국의 공공외교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공공외교법에 관한 법률안을 보다 풍부하게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반적인 최고 공공외교법 아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더 상세한 하위법안이 필요하다. 미국의 스미스-몬트법은 ‘1961년 교육과 문화 상호교류법’, ‘1990-1991년 회계연도 대외관계수권법’, ‘2012년 스미스-몬트 현대법’ 등 여러 차례 법안에 걸쳐 보완적으로 개정됐다. 한국은 앞으로도 길고 긴 공공외교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시대의 흐름과 각국의 공공외교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의 개선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공공외교법이 앞으로도 공공외교 사업을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은 문화외교, 지식외교, 정책외교 등 세 방면에서 큰 틀에서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프랑스 캠퍼스, 프랑스 연구소, 프랑스 국제기술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각각 공공외교사업의 학교 차원, 지식문화 측면, 기술교류 측면의 업무를 다루게 되었다. 한국이 문화지식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의 업무가 겹칠 가능성이 있고, 보다 세밀하게 담당분야를 분류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업무가 겹치는 충돌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영국의 저명한 문화 외교관 미첼이 명저 '국제문화관계'에서 "문화외교는 국가 전체 외교전략의 일부이지만 문화외교 자체의 방법, 이념적으로 전통외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문화외교가 중요한 핵심인 공공외교를 국가 직접통제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고 국가전략 전체의 일부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민간과 본질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그 본질은 민간의 역량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03년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국제교류기금은 독립 행정 법인 특수 법인 전환에 공공 외교의 민간화된 것이 바로 대표적 사례이다. 전통외교 중 이원외교를 고집하는 결과는 공공외교에 '외교적 침략', '국가선전', '문화제국주의'라는 비판을 초래할 뿐이다. 국가 전체의 전략 측면에서도 효과는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에는 적극적으로 일본 민간

문화 외교 전후 민간 외교 추진의 장점을 어느 정도 섭취해야 한다. 보수적인 '일원외교'라는 낡은 전통 외교이념을 버리고 문화외교에서 정부 기능을 과감히 전환해 공공외교의 막후에서 민간주체가 국가문화외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의 공공외교법과 미국의 스미스-몬트법 사이에 큰 차이 하나는 미국이 신문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법률적 측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설계했다는 점이다. 스미스-몬트법 501조는 “국무장관이 미국, 미국민, 미국의 정책에 관한 정보를 해외에 전파할 때 언론, 출판물, 라디오, 애니메이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를 정보센터와 해외 지도자를 통해 전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⁵³⁾ 이는 국무장관이 신문과 언론을 이용해 미국의 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한다. 502조에서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더 제한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법은 국무부에 단파프로그램에 대한 독점권을 주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국무부에 어떤 다른 언론 정보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외교 추진 과정에서 언론 보도와 여론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적 홍보 차원에서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공고함으로써 공공외교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⁵²⁾ Shawn Powers. U.S. International Broadcasting: An Untapped Resource for Domestic and Ethnic News Organization, http://academia.edu/2271900/U.S._International_Broadcasting_An_Untapped_Resource_for_Domestic_and_Ethnic_News_Organization. (검색일: 2020.12.18.)

⁵³⁾ 《美国之音为什么不能对内广播》. 美国之音中文网. <http://www.voachinese.com/content/a-21-w2009-05-24-voa43-61362467/1026865.html> (검색일: 2020.12.18.)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공공외교법에서 미디어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공공외교 홍보 과정에서의 언론홍보 이용을 강조할 것인지,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언론뉴스의 권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향후 법 정비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스미스-몬트법 603조 "위원회 건설 전 6개월간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했는데...본법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고, 반년마다 국회에 모든 프로그램과 행동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8항의 관리절차에는 국무장관의 본법 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권한에 대한 내용, 정부기관의 자산과 기구의 최대 사용권 제한, 그리고 9항의 규정의 자금 출처와 선불 자금을 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운영체제나 자금 운용, 감독 체계에서 더욱 명확하게 규율돼 있다. 반면 한국은 공공외교법 9항의 사태 조사와 13항의 국회 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공외교 사업을 감독하고 심의하는 데 미흡하고 엄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전체 공공외교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원자금이 낭비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III 한국의 공공외교법 통과 이후 공공외교 활동

1. 2016년 이전의 공공외교 현황

이런 시대 배경 안에서 각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대중이 자기 나라에

호감도와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세계 많은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만 중요시 하는 것에서 오는 폐단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공공외교를 국가의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강대국들이 공공외교를 빠르게 추구하는 국제 질서 중에 한국 정부도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식으로 공공외교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공공외교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합니다.”

한국은 “2010년에 ‘공공외교의 원년’을 선포하였고, 2011년에 최초로 공공외교 대사가 임명되었으며, 2012년에는 공공외교정책과가 신설되었다. 2010년 이후 공공외교는 단순히 문화 외교의 ‘채포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위상이 제고되었고 가용자원도 증가하였다.”⁵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게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한국 정부가 공공외교 사업에 꾸준히 노력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 평가는 공공외교 원년인 2010년부터 5년 사이에 33%에서 38%로 증

⁵⁴⁾한국외대 공공외교. 2019. 「강의요약문<13주차-한국 공공외교의 역사와 평가>」.
<https://blog.naver.com/hufpublicdiplomacy/221729846051> (검색일:2020.06.25.)

가였다. 불과 5년 사이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 향상된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⁵⁵⁾ 대체적으로 보면 2016년 공공외교법이 시행하기 전의 한국공공외교 해마다 추진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년도	추진 내용
2010.05	공공외교 원년 선포/ 한국 공공외교 포럼 창설
2011.09	공공외교 대사 임명
2012.01	공공외교정책과 신설 및 공공외교 시범사업 추진
2013.01	공공외교 신규 예산 (60억원) 반영
2014.01	공공외교 신규 예산 (90억원) 반영
2015.01	공공외교 신규 예산 (133억원) 반영
2016.01	공공외교 신규 예산 (142억원) 반영/공공외교법 통과 /공공외교 대사직 및 정책 공공외교 전담부서 신설
2016.08	공공외교법 시행령 제정

<표 6 >공공외교 추진현황

자료: 외교부. 2016.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현황 및 공공외교법 주요 내용⁵⁶⁾

1) 문화외교의 지평 확대 : 1993년~2008년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문화정책도 단순히 전통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

55) 한인택. 2016a.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JPI Research Series』 37호. pp.268.

56) 외교부. 2016.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 추진현황 및 공공외교법 주요 내용」. 『공공외교법 발효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pp.22

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의 산업화, 지역발전 등 문화정책의 입지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문화산업 발전 및 확장을 위한 조치와 정책을 명시한 '문화 창달 5개년 계획(1993-1997)'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문화 외교는 대외 홍보에 초점을 맞췄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와 기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문화 외교에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문화산업과 하이테크 산업을 21세기 한국 발전의 근간으로 삼는다. 김대중 정부는 그해 '국민정부의 새로운 문화와 정책'을 내세워 문화 콘텐츠 검열 폐지를 통해 문화 창작에 더 많은 자유와 포용을 부여하는 '문화 입국'⁵⁷⁾ 전략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문화예산이 2000년 처음으로 정부 총예산의 1%를 돌파하면서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 창의 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이 가운데 관광과 문화산업에 쓰이는 예산이 3배로 늘었다. 1999~2001년 '문화산업촉진법'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21세기 문화산업 구상'⁵⁸⁾ 등 입법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다. 이 같은 각종 문화정책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그동안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전신 단계가 크게 발전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대회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고 세계인과의 가까워져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보급과

57) 상용 .2015. 『문화입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58) 詹德斌. 2013. 「韩国文化战略与文化外交」. 『国际研究参考』 (11)

정책 지원으로 한국의 문화산업은 5억 달러로 세계 시장의 1.5%를 차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김대중 시절의 문화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이어 갔다. 한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산업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이 시기에 한국 드라마 '풀 하우스', '대장금'으로 대표되는 드라마가 해외로 나가면서 높은 시청률을 만들어 내어 동시에 “한류” 열풍은 일본과 중국 등의 아시아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기 한국의 공공외교 이념은 공식적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주로 '문화외교'라는 신분 아래 공공 외교를 들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문화 외교를 화두로 키워냈다. 이 시기는 향후 한국 공공외교의 개념 제시와 미래 전면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 공공외교의 “원년” 확립: 2008년~2016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의 공공외교 발전이 본격화됐다. 10여 년의 발전과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은 2010년 공공외교라는 개념을 공식화했다. 대내적으로는 국가브랜드 구축을 중시하게 되었다. 2009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정체성과 친근감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브랜드이미지위원회가 출범했다. 2010년 한국 공공외교 포럼이 출범하면서 공공외교에 대한 전문 자문기구가 생겼고, 공공외교 정책의 연속성과 유효성이 보장됐다. 2011년에는 외교부에 처

음으로 '공공외교 대사'가 설치됐다. 2012년 '공공외교정책과'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내 공공외교의 위상과 건의에 대한 전달을 더욱 명확히 하고 공공외교 실시 중인 여러 부문의 조율을 가능케 했다. 이명박 정부도 과거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 발전을 중시했다. 문화관광부는 2012년 '한류 문화 진흥단'을 설치해 한국 문화의 해외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⁵⁹⁾ 대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주로 공공외교를 발전시켰다.

우선 정부는 국제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유엔을 기반으로 군축, 환경관리, 핵 오염, 핵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범위, 특히 개발도상국 및 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2013년 한국의 대외원조(ODA)가 2008년보다 4% 증가했다.⁶⁰⁾ 문화 외교의 실시에 있어서 한국 문화는 계속 해외 전파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들이 문화 전파의 선두주자로 나서 관련 문화 전시회, 문화 심포지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해외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공외교가 국가전략의 높이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외교 발전을 위한 거시구조를 함께 구축하는 '맞춤형' 기구를 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

59) 张永喆. 2020. 「21世纪以来韩国公共外交发展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60) 王圆. 2019. 「韩国官方开发援助 (ODA) 发展历史与现状探析」. 『东亚评论』. (02)

산력과 발전 수준을 대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 시기에 급부상했고, 공공외교의 '정책화'가 향후 공공외교 법안 출범의 토대와 보장을 제공했다.

2013년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모든 사람이 참여한 공유문화를 만들기”의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외교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고 공공외교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다. 외교통상부는 2013년 외교부와 산업통상부를 두 개로 분리하고 공공외교 전문 웹 사이트를 개설해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같은 해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 특별자금을 설립하여 전 세계 178개 재외공관에 공공외교활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문화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돼 한국의 국제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목표였다. 박근혜 정부는 아래의 두 가지 방면에 치중했다. 첫째, 분야별 문화발전을 지원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관광, 영상, 예술 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며, 둘째, 문화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산업 배경을 보면 전통산업의 동력이 부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은 한국경제의 발전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한국 문화 융성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⁶¹⁾ 같은 해 문화관광부는 문예 종사자의 창작에 대한 지원을 제시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뮤지컬 등 5대 창의 산업을 육성하는 등 '세계에서 한류 영향력'을 확대해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시장

61) 외교부, 2016. 『외교백서』

점유율을 높였다. 재외공관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직접 창구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국가 간 공공 외교를 공고히 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 공공 외교 전략의 특징 중의 하나다. 2013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제 1회 한중 공공외교 포럼에서는 한중 정부, 학계, 언론, 기업, 비정부기구와 공공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한중 공공외교 포럼은 2020년까지 7회 연속 개최돼 한중 교류 및 공공외교를 활성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공공외교 포럼은 한중일 3국의 공공외교 분야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6년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리차드 스타인절 (Richard Stengel) 미 국무부 공공외교담당 차관은 서울에서 한미 첫 고위급 회담을 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논의했다. 이번 대화로 2016년 10억 원의 특별 자금이 추가돼 대중 매체 간 공공외교 싱크 탱크 교류에 쓰이게 됐다.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한국의 공공외교는 국내외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내부적으로는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류'가 새로운 정점을 맞고 있으며, 분야별 문화발전도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져 국제적 이미지가 높아져 목표 국가에 미치는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공공외교의 국제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2. 2016년 이후 공공외교의 변화

2016년 2월에 공공외교법을 공포하고 2017년 7월에 시행령도 발효했다. 그때부터 한국의 공공외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공공외교법에 따르면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게 시키는 외교활동”으로 정의된다.⁶²⁾ 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중앙부처나 지자체 및 국민 개개인이 모두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외교부를 비롯하여 문체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 국립국제교육원 등 정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국내 부처·기관들이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⁶³⁾

한국 외교부는 2017년에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5년 사이에 공공외교의 비전, 전략, 중점 추진과제 및 과제별 소관 부처를 상세하게 망라한다. 지금까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지도하에 3년간 공공외교 실행계획을 세웠고, 문화, 지식, 정책 3대 공공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꾸준히

⁶²⁾ 공공외교법. 2016.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

⁶³⁾ 외교부-공공외교 포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검색일: 2020.5.15)

실천해 공공외교 전반을 발전 시켜 왔다.

이어 매년 외교부가 발표하는 외교백서를 통해 연도별 공공외교 전반에 걸쳐 실천적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 외교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다. 공공외교법 제정 이전까지 한국 공공외교의 사업 전개 성과와 법 제정 이후 공공외교 사업 전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구체적인 차이점 변화를 비교해 본다. 공공외교법 개정이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갖췄는지를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변화:

1. 공공외교법은 한국 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전략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종전의 공공외교 사업 내용보다 훨씬 상세하고 주제가 명확하다. 법 제정은 공공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5년 기본 시행계획, 연도별 종합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외교백서의 연도별 사업 전개 통계를 보면 2016년까지 공공외교 총체적 사업 내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주로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공공외교와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2가지로 구분되며, 문화국가 차원의 포럼, 민간행사, 스포츠행사, 재외공관 문화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이 있고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법 제정 이후인 2017년과 2018년 공공외교 사업은 네 가지로 풍부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으로 나뉘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동안 복잡했던 공공외교의 구체적 업무를 문화, 지식, 정책, 국민외교

의 4단계로 나눠 업무의 미세화, 명확화를 추진해 업무 중복, 자원 무효화 문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의 효율적 최적화 효과를 촉진한다.

공공외교법 시행 전의 공공외교 업무 종류	
국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 수립 노력 강화 ▷ 매력한국알리기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 ▷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 공공외교 포럼 ▷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 민간외교단체 지원
문화를 통한 국가간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유네스코 외교 강화 ▷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반영 ▷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 외교관계수립기념 문화행사 개최 ▷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 한류 확산 ▷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외교 ▷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 ▷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 스포츠 국제 협력 ▷ 교육학술협력 지원
공공외교법 시행 후의 공공외교 업무 종류	
1) 풍부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 공공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주간행사 (2) 주요 외교 계기 기념사업 (3) 재외공관 국가 브랜드 전시 사업

	(4)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 (5)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6) 스포츠공공외교 협력사업 (7) 해외 미술관·박물관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
2) 지식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1)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2)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3) 교육·학술 협력 지원
3) 정책공공외교를 통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1) 주요 국가 대상 정책공공외교 (2) 주한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4)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	(1)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 (2) 재외 예술인 활용 문화행사

<표 7> 한국 공공외교법 시행 전후 업무 종류 비교

자료: 저자 제작

또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공공외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주체의 방향이 명확해지도록 하며, 매년 시행결과와 사회발전 현황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신속히 조정하여 공공외교 사업의 방향이 올바른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지도하에 2018, 2019, 2020 공공외교 종합실행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의 보고 중에서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 성과가 언급되고 총 시행사업은 81건, 이 중 정상 추진은 46건, 추가 추진은 34건이었다. 주요성과는 27개국 41개 자매·우호지역과 경제통상·청소년·대학·농업과학기술·환경·문화예술·스포츠 등 분야별 교류사업 실시를 통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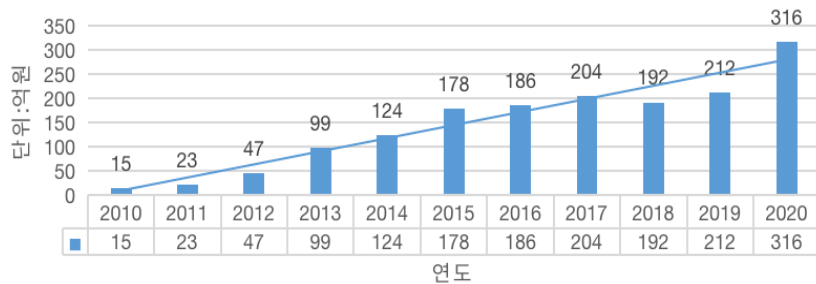
제 우호 협력이 강화된다. G-Fair 스타트업 초청(4개국 11개), 비바테크의 파견(4개) 등 스타트업의 상호초청을 통해 경제협력을 증진한다. 문화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미지 제고된다. 일본·멕시코 등에 문화예술단 파견 및 K-Culture FESTA 등을 통한 문화의 체계적 전파되면서 국내외 문화전문가의 교류도 빈번해지고 다양한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구축하는 전략 목표 아래 국제 개발 협력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실행 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한편, 국가 전체의 중장기 전략목표에 부응하여 새해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도할 수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가 전년도 업무 전개 상황을 매년 종합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연구하여, 국제 국내의 실제 상황에 따라보다 적절하게 새로운 올해의 공공외교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공공외교 연례 사업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시행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는 의미 보유한다. 중앙행정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 중이며, 외국 지방 주민들과의 풀뿌리 차원의 유대감 강화 및 복합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한다.⁶⁴⁾ 향후 공공외교 수행 주체 간 사업의 공공외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의 추진 필요하다.⁶⁵⁾

64) 외교부.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65) 위의 자료.

2. 입법 이후 예산 투입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한 층 더 강화된다. 국민외교가 정부 주도의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한국 외교부의 공공외교 예산변화 추이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 공공외교의 예산이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십년 간 공공 외교 예산은 2010년보다 20배 올랐다.⁶⁶⁾ 세계 주요국 외교부의 공공외교 예산 현황 조사 결과, 한국의 예산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나라의 뒤에 서 있고 세계 8위이다. 한국이 선진국 비해 공공 외교 사업은 뒤늦게 시작했지만 시대 변화의 트렌드와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0년간 공공외교에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은 것은 공공외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림 4> 한국 공공외교 예산변화 추이(단위: 억원)

자료: 외교부. 2017. 공공외교 안내서

⁶⁶⁾ 외교부. 2017. 『공공외교안내서』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 외교 및 경제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
민국 외교의 3대 축으로 설정하여 공공외교를 강화해왔다. (외교부)
2016년에 발효한 한국 공공외교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 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
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
교활동을 말한다⁶⁷⁾. 정의를 보면 공공외교는 주로 외국의 대중을 그 대
상으로 하지만 NGO·대학·언론 등도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과 단체·기관도 공공외
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⁶⁸⁾.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국민외교도
한국 공공외교의 총체적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3. 세계적으로 한국은 문화외교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교류하며 타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은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
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다. 이런 기본 원칙 아래 한국은
세계 더 많은 나라들과의 공공외교 사업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

⁶⁷⁾ 공공외교법. 2016.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

⁶⁸⁾ “제1회 동대문 DDP 공공외교주간에 참여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oz82/221385465021>(검색일:2020.08.12)

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에 따르면 세계 각국과의 외교를 더욱 넓히고, 한국의 국제우호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현지 유력 싱크탱크와 함께 공공외교대화를 열었다. 정상 방문에 앞서 열린 공공외교 대화를 통해 현지 사회의 한국 정상외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등 신남방지역에서 '2018 코리아 워크 페스티벌'(한국문화축제)을 개최해 영화, 유진, 국악, 태권도,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종합적으로 홍보해 현지인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18년에만 23개국에서 42회에 걸쳐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으며 이 중 9개국과 수교를 맺고 14개국과 주요 외교의 계기를 기념하는 사업을 벌였다. 수교 60 주년을 맞은 태국과는 연내에 기념표지 공모전, 한국어 말하기대회, 학술세미나, 양국 합동전시회,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모잠비크(수교 25주년), 카보베르데(수교 30주년), 투발루, 솔로몬 제도(수교 40주년), 가이아나(수교 50주년) 등과 다각도로 수교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4.문화외교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정책외교 분야 사업 추진도 확대했다. 공공외교법이 제정된 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외교부는 주요국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공공외교를 적극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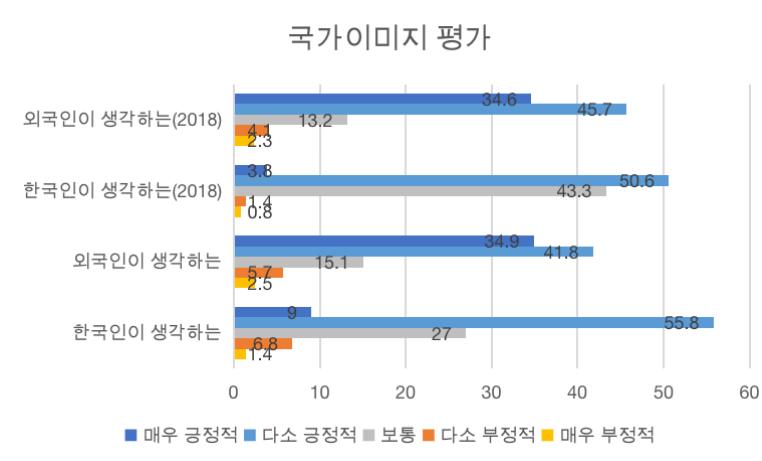
우선 외교부는 한미 공공외교 관계를 적극 추진해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 언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강연,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영국,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유럽 주요 지역의 싱크탱크, 학계, 언론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포럼, 간담회,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공공외교 대사와 한반도 분야 전문가 학자들이 주영국 한국대사관과 주요 외교안보 분야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현지인들의 한국 정책을 증진시켰다. 또 재외공관에서 외교부 지도 아래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한국 외교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외교 멀티미디어 홍보 부분 활성화를 추진했다.

2) 한국 공공외교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이 절에서는 공공외교법(2016)이 제정된 이래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특히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지수화하는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분석한다. 공공외교의 추진은 한 나라의 역사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외국 국민이 공공외교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공공외교 사업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은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8,000명의 참여지원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본 조사는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6가지 방면으로 나누어지고 한국에 대한 인지, 한국에 대한 호감도, 한국 관련 경험, 한국 이미지 평가, 한국 이미지 변화, 일반특성(개인정보) 등이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이 발표한 2019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따르면 한국인에 대한 각 나라 국민의 인상 호감도, 한국 각 분야에 대한 각국 국민의 관심도, 인상 변화,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효과를 살펴본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림 5> 국가이미지 평가

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19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첫째, 대중문화의 주도는 외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끔 촉진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인상)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긍정 응답 비중 76.7%)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보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중문화(38.2%)가 가장 많았고, 경제문화유산제품 브랜드가 뒤를 이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들의 긍정 응답 비중이 80.3%에서 76.7%로 감소하였고, 부정 응답 비중이 6.4%에서 8.2%로 증가하였다. 부정 응답 요인으로 '북핵 문제', '정치 상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은 'K-POP/가수'(12.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한식'(8.5%), '문화'(6.5%) 등 한류 관련 연상이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술력/첨단기술'(4.8%), '기업 브랜드'(4.5%) 등 경제 관련 연상 비중이 높았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 이미지는 긍정 72.7%, 부정 11.5%로 긍정 연상이 월등히 우세, 부정적 연상 대부분 '남북관계'와 '전쟁', '북핵 문제' 관련 내용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대중문화'(37.8%)이며, 다음에 경제 및 안보다. 한국인'에 대해 호감도 조사 결과는 호감 71.3%, 비호감 6.3%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보인다. 2018년과 비교하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 평가가 0.2% 증가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연상 인물의 톱10 명중에서 정치인은 3명(문재인, 박근혜, 반기문)만 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연예계의 가수, 배우, 아이돌 단체나 운동선수이다. 한국 국가 이미지에 있어 문화 분야의 영향력은 한류 확산과 맞물려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경제 군사 등 자연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문화 역량의 특색을 잘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중문화 한류를 활용해 외국 국민을 충분히 끌어들이며 한반도 핵 위협, 정치적 약세에 대한 외국 국민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한국의 대중문화, 경제제품 브랜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것이다. 공공외교를 활성화한 문화 외교의 성과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서도 정책 외교 부분, 특히 정치·안보적 이슈를 최적화하고 상황을 개선해 외국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 관련 접촉 경로는 '방송'(66.6%), '온라인'(63.9%)을 통한 접촉이 많았으며, 그다음은 '신문/잡지'(41.4%), '지인들'(28.2%) 순으로 이어진다.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존 활동의 토대 위에서 방송과 인터넷 방식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전달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둘째, 나라별 맞춤형 공공외교가 필요하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러시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85% 이상)했다. 한편 일본의 부정 평가 비율은 전년(43.4%) 대비 높아(53.2%)졌다. 작년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⁶⁹⁾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UAE 등의 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한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⁶⁹⁾머니투데이 뉴스, “‘한국 좋다’ 외국인보다 한국인의 긍정 평가 비율 높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8&aid=0004351365>(검색일:2020.9.30)

긍정: 72.7%		중립: 15.8%		부정: 11.5%	
(사례수:5,453)		(사례수:1,187)		(사례수:710)	
K-POP/가수	13.7	K-POP/가수	14.8	북한/남북관계	28.3
한식/식품	9.5	한식/식품	8.8	전쟁	9.3
문화/문화유산	8.1	북한/남북관계	8.2	북한/안보문제	7.5
기술력/첨단기술	6.3	K-뷰티/화장품	3.1	정부/정치문제	5.5
기업브랜드	5.5	기업브랜드	2.9	분단국가	3.8
스포츠/선수	4.9	문화/문화유산	2.8	K-POP/가수	2.5
드라마/영화	4.8	드라마/영화	2.6	외교관계	2.4
경제/경제발전	3.6	정치	2.6	독재	1.8
K-뷰티/화장품	2.4	스포츠/선수	2.1	외모지상주의	1.5
IT/전자산업	2.3	호감 있는	2.1	문화/문화유산	1.4

<표 8> 외국인 한국에 대한 평가 및 영향 요소

(단위:%)

*전체 부정 응답자860명 중 일본 응답자가 150명으로, 특정국가의 영향이 너무 커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19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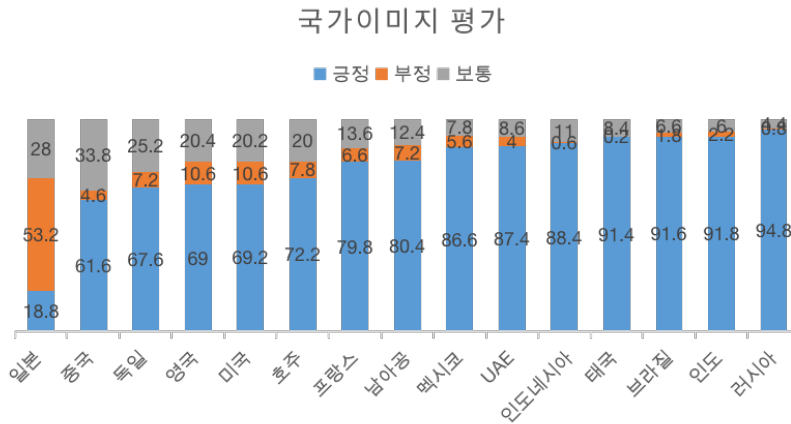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호주, 남아공 등의 나라가 한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 기대하지만, 한국의 안보가 걱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가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 외교만으로는 설득과 신뢰를 얻기 어렵고, 정책 외교, 특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서 보다 나은 해결이 이뤄져야만 이들 국가의 공공외교에 더 나은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이 줄곧 밀접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적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한중 간 접촉 교류는 높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상은 그리 높지 않다. 2019년 결과,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낮아졌다는 것은 한중 사드 문제가 완화된 이후 한중 간 교류가 늘었다는 징표다.⁷⁰⁾ 중국의 국가 특성상 국가적인 영향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인상을 높이는 요인은 한국·중국 국가 차원의 외교 관계 조정이다. 중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나라의 외교가 공공외교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통계 결과 전체 중 가장 선명한 특징 중 하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가 가장 낮았다. 특히 올해 아베 정권의 반한기조가 국민들에게 학습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53.2%로 증가한다. 일본 국민이 한국 정보를 얻는 방식은 주로 뉴스 방송, TV 채널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하는 정치적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⁷¹⁾ 특히 2019년에 위안부합의, 강제 징용공배상 문제가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연장 이슈로까지 확산되면서 부정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다. 한국에 대해 불신하는 일본 민간의 특성을 보이고 정치적 대립 갈등을 넘어 민간 교류 및 공공 외교가 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양국 국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적 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국가 이미지의 제고가 필요

70) 韩德睿. 2019. 「韩国对华公共外交战略:环境、目标和对象」. 『战略决策研究』10(01). pp. 63-81+104.

71) 해외문화홍보원. 2018, 2019.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 외교의 정책 제정은 활동 전개 과정에서 나라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해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림 6> 2019 각국 한국의 국가이미지 평가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20.0	66.0	79.4	72.6	73.0	78.4	81.4	85.6
43.4	11.2	4.2	6.6	6.8	5.0	4.0	4.6
러시아	멕시코	UAE	인도네.	태국	브라질	인도	
95.6	93.8	86.4	96.4	91.6	92.0	93.0	
1.4	0.6	2.0	0.4	2.2	2.2	2.4	

<표 9> 2019 각국 한국의 국가이미지 평가

자료: 해외문화홍보원 2019년도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이어 현 단계의 지수와 이전 단계의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국제사회

에서 한국의 위상 향상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 추진 성과 유무를 측면적으로 반영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또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표6> 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각 연구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순위나 지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다양한 유형의 지수 조사를 수집해 연도별 구체적인 순위 데이터를 비교한 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순위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비교 분석했다. 연도 선택은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법 시행 이전인 2013~2016년의 데이터와 시행 후인 2019년 또는 2020년의 데이터를 선택한다. 2016년의 통계수치는 주로 과학기술 문화 평화 안보 세계 질서 지구환경 번영 및 평등 건강 및 복지 7대 부문이 있고 좋은 국가지수는 20위/153개국으로, 종전 47위/125개국 순위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공공외교의 원년 지정 이후 수립 이후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위상이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나머지 지수는 국가브랜드지수를 제외한 75개국 중 20위 수준을 유지하며 순위를 유지했고, 나머지 최고지수, 국제경쟁지수, 사회발전지수, 국가 평판도 지수, 2016년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좋은 나라들의 국제지수에서 더 나아가서 데이터 변화를 보면 평화 안보, 번영, 평등, 건강, 복지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최우수국가 지수 중세서 문화적 영향력, 헤리티지 및 비즈니스 오픈 몇 가지 부분의 지수는 제일 많이 제공된다. 문화적 영향력의 척도 지수는 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 오락, 패션, 행복, 영향력 있는 문화, 현

대화, 명성, 유행 등을 포함하고, (culturally significant in terms of entertainment, fashionable, happy, has an influential culture, modern, prestigious, trend), 헤리티지가 풍부한 역사, 훌륭한 음식, 많은 문화적 볼거리 등이 있다. (culturally accessible, has a rich history, has great food, many cultural attractions) 이 두 가지 주요 요소 모두 문화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최우수 국가 지수가 높아진 것은 문화적 요인의 행동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문화적 가치관의 소프트 파워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외교 사업 추진의 유효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수 유형	국제순위	년도	국제순위	년도	변화			
좋은국가지수 (Good Country Index)	47위/125 개국	2010	20위/153 개국	2016	상승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30		55	하락		
	문화(Culture)		34		34	상승		
	평화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19		14	상승		
	세계질서(World Order)		45		29	상승		
	지구환경 (Planet and Climate)		71		113	하락		
	번영 및 평등 (Prosperity and Equality)		60		24	상승		
	건강 및 복지 (Health and Wellbeing)		65		24	상승		
	최우수 국가지수 (Best Country Index)		19위/60 개국		2016	20위/73 개국	2020	상승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12		8
어드벤처 (Adventure)		50	55	상승				
시민권(Citizenship)		22	24	상승				
문화적 영향력 (Cultural Influence)		27	20	상승				
헤리티지(Heritage)		38	30	상승				
모버(Movers)		13	11	상승				
비즈니스 오픈 (Open for Business)		38	31	상승				
파워(Power)		10	9	상승				
삶의 질(Quality of Life)		20	23	상승				
국가브랜드지수 (Country Brand Index)	20위/75 개국	2014~ 5	20위/75 개국	2019	불변			
국제경쟁성지수(Global	26위/144	2014~	13위/141	2019	상승			

Competitiveness Index)	개국	5	개국		
사회발전지수 (SPI: Social Progress Index)	29위/133 개국	2015	17위/163 개국	2020	상승
국가평판도(World's Most Reputable Countries)	34위/50 개국	2013	31위/55 개국	2019	상승

<표 10>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국제위상 변화 추이

자료: Simon Anholt. The Good Country Index, <http://www.goodcountry.org>; FutureBrand. Country Index 2014-2015,2019, <https://www.futurebrand.com/US news best countries Index>, <https://www.usnews.com/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2014-2015,2019>, <http://www.weforum.org/The World's Most Reputable Countries 2013,2019>, <http://www.reputationinstitute.com/Social Progress Imperative. Social Progress Index 2015,2020>,<http://www.socialprogressimperative.org/>

IV 결론: 한국 공공외교법의 성격과 평가

공공외교법 출범 전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새로운 단계에 공공외교법 출범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이 보다 체계화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공공외교법의 공포는 전반적인 공공외교 사업의 큰 진전이다. 법으로 공공외교 전반의 사업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외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공공외교법이 공공외교 사업의 정의, 목적 원칙, 구체적인 시행 주체와 의무를 명시한 것은 법 제정 이전 한국의 공공외교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행 주체가 혼란스러우며 내용이 중첩돼 혼재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바꿔 놓았다.

신설된 공공외교위원회는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사태 점검, 공공외교 네트워크 운영 등 기존 공공외교 사업 내용을 혁신하고 효율화하도록 했다. 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공공외교에서 단기적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전체적인 사업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민간조직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 중앙지방에서 합동으로 현지 특성에 맞는 공공외교 콘텐츠 형식을 제정하여 매년 심사 최적화하여 공공외교 사업 활동을 더욱 정교화 하였다. 공공외교는 주관, 지원 기관 → 실행 기관 → 평가 기관 등의 체제 정비를 통하여 생소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외교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제고했다⁷²⁾. 3년 만에 정책, 문화, 지식 공공외교의 세 가지 측면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공공외교가 한국 외교 전반의 중요한 보조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 다른 나라의 유사한 공공외교법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면 한국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초보적인 발전 단계로, 법률정책 자체나 공공외교의 구체적 사업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개선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3개국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한국 공공외교법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3국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해 향후 한국의 공공외교법 개정 시 시사점을 던져주고 한국

⁷²⁾ 김용훈. 2018. 「실효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法學論叢』제25집 제2호 PP.167-205

사회 현황에 맞는 법안을 제정하고 꾸준히 보완해 한국형 공공외교를 정착시켜야 한다. 개선 의견은 다음 몇 가지와 같다.

우선 법 제정에서 중앙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에 대한 지원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호 협력과 지원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각 주체가 권한의 크기를 얼마나 명확히 규정했는지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권한 구분이 모호하면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업무가 겹치거나 업무가 서로 통제되지 않는 모호한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 공공외교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위상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적합성 및 법률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정성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 사업에 대한 참고 및 논의가 필요하다⁷³⁾. 이를 위하여 공공외교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기관 권한 중심의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외교는 문화 외교의 영역에만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인

73) 김용훈. 2018. 「실효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法學論叢』제25집 제2호 PP.167-205

수준에서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이 확보되고 있지는 못하다.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와 한국의 위상 통계를 보면 외국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대중문화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외교의 내용이다. 문화가 쉽게 전파되고 문화 외교도 공공외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펼쳤는지와 보급 효과로 볼 때 다른 종류의 공공외교보다 문화 외교의 추진이 더 낫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분야의 공공외교 사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책 외교의 전략적 고도는 외교 정책 전반에 더 밀착돼 전략적이고 중요성이 큰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문화 지식 분야가 계속 추진되면서 한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 애착이 커지고, 한 나라의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애착은 그 나라의 언어문화 역사에 대한 학습과 연구로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공공외교 분야의 한국학 한국어 사업 확산은 더 많은 학생과 지식인층에게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적 가치의 확산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충분히 진행된 토대 위에서 어떻게 더 나은 지식공공외교를 구사할 수 있을지, 더 높은 인재들이 한국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한국학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배울지 고민해볼 일이다.

셋째, 실천 과정에서 예산의 이용 유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사업성과 점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의 세 가지 주요 정책 공조와 국민외교, 공공외교 및 여타외교

의 시너지 증진이 필요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 외교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원래 목적인 해외 사업보다 현지 사무소 유지비용으로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⁷⁴⁾ “해외 사무소 예산 28억2천100만 원 가운데 사업비 집행액은 5억7천400만원(20.3%)에 그쳤다. 반면 파견자 보수 12억4천만 원(44.0%)와 현지 주택 임차료 지원비 4억 원(13.9%) 등 사무소 유지비용이 57.9%를 차지했다.”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는지, 아니면 본말이 전도된 것인지는 관련 정책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법의 구체적 조항은 공공외교위원회 운영, 관련 인력 선발, 계획 수립, 시행, 사태 조사 등 사실상 외교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공공외교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는 앞으로 공공외교 사업 전개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외교를 시행하는 과정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외교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국 국민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노력이다. 상대국의 국민은 역사, 문화, 종교, 인종 등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일률

74) 연합뉴스. "국제교류재단, 해외사업 보다 사무소 유지에 예산…배보다 배꼽".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54903Y>(검색일: 2020.10.12)

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외교의 대상이 갖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⁷⁵⁾. 외국인의 한국 국가이미지 평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마다 국가 속성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수립 과정에서 국가 특성, 국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쌍방향 공공외교'를 현지화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네트워크 형식을 활용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구체적 활동과 결합해 외국 국민이 원하는 공공외교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야 한다.⁷⁶⁾

공공외교의 원칙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별 국가에 편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공외교의 추진 과정에서 국제정세의 영향이 크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약소국에 대한 공공외교 추진전략의 차이와 조정이 불가피하다. 개별 국가를 상대로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편향되지 않은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에 치중되었는지는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공공외교 정책을 제정할 때 외교적 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하며, 공공외교도 그러한 가치를

75)한인택. 2016c.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JPI 정책포럼』 제187호, (제주평화연구원) PP.2.

76)한인택. 2016a.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 『JPI Research Series』37호. pp.266-271.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양국 간에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외교의 목적은 교류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사람 간의 교류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공공외교 과정에서 효과가 크게 퇴색할 수 있다. 보편적인 가치관과 쌍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관이 있어야 외교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슴과 심기(to win the hearts and minds)를 얻을 수 있고 서로 윈-윈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 공공외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한인택, 2016a, 2016c)

참고문헌

- 학술지

- 김동택. 2006. 「한류와 한국학 - 해외 한국학 현황과 지원방안」. 『역사비평』 PP.213-240.
- 김용훈. 2018. 「실효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영국의 경험을 통한 공공외교법 개정 방향성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제25집 제2호 PP.167-205
- 김태환. 2012. 「 21세기 한국형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외교정책의 패러다임 쉬프트와 전략적 맵핑」. 『외교정책일반』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소) 2012-35호
2015. 「한국형 중견국 공공외교: 자유주의적, 구성주의적 접근」. (외교안보연구소) 2019.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 『문화와정치』 6권 1호. pp.5-32.
- 마영삼. 2011.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방향」. 『Jpi 정책포럼』 83권0호. pp.1-19.
- 백우열. 2015.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전략과 실행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제3호 90호. pp.115-142.
2017. 「한국공공외교 전략 및 정책 연구 : 기초적 유형의 개념화」. 『국가전략』 제23권 3호. pp.5-32.
- 백우열 · 함명식. 2017. 「중국의 대한공공외교 성과와 한계분석」. 『

- 한국정치학회보』 51(5). PP.135-159
- 성병욱. 2013. 「공공외교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대한정치학회보』 20권 3호. PP1-23.
- 송정은. 2014. 「경제한류와 문화한류가 한국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역할 -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류비즈니스연구』, 1(1), pp.109-142.
- 신진. 2017. 「공공외교의 한·미간 비교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5(4), pp.1-26.
- 유병선. 2018.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은기수. 2015. “인구와 가족: 가족의 인구학적 접근” 김혜경 등.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pp.54-91
- 전병곤. (201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통일연구원 연구정책세미나, 2013(0), 1-161.
- 주미영. 2015. 「글로벌 신뢰국가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정치정보연구』18권2. PP. 31-58
- 한인택. 2016a. 「공공외교 2.0을 지향하며: 공공외교법의 발효를 계기로」. 『JPI Research Series』37호. pp.266-271.
- 2016b. 「制定《公共外交法》的背景與意義」. 『성균중국관찰』 16권 0호 pp.76-79.
- 2016c.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평가와 발전 방향」. 『JPI 정

- 책포럼』 제187호, (제주평화연구원) PP.2.
- 남석상. 2016. 「거점네트워크 플랫폼모델을 통한 공공외교의 효율성 제고-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상철. 2013. 「중국의 공공외교 전략과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윤준필. 2016. 「한국의 공공외교 방향에 관한연구 -행위주체 중심의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 중심의 관점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니콜라스J. 켈2013. 「걸리온 이전의 공공외교: “public diplomacy” 라는 용어의 변천과정」. 낸시스노우, 필립 M. 테일러 (역은이). 『21세기 공공외교핸드북』. 서울: 인간사랑. pp.56-66.
- 刘吉文. 2018. 「韩国军事公共外交研究」. 『公共外交季刊』 pp.88-94+1
2020. 「公共外交视角下的韩国卫生外交」. 『公共外交季刊』(03). pp.87-93+124.
- 刘德斌. 2015. 「公共外交时代」.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第55卷 第3期 pp. 5-19.
- 卢暄, 何丹. 2016. 「西方国家公共外交实践之现状分析-以美国、以色列和法国为例」. 『牡丹江大学学报』. 第25卷, 第7期. pp.115-117
- 吴瑾. 「公共外交新思维:国家营销——以“韩流”为例」. 『现代营销(下旬刊)』

- (08) pp.3-4.
- 廖宏斌. 2009. 「公共外交：国际经验与启示」.『当代世界与社会主义』
- 张琪. 2017. 「公共外交视角下的韩国国家形象构建浅析」. 『当代韩国』(02)
pp.52-66.
- 成蕴. 2020.「冷战后日本公共外交运作模式」.『公关世界理论版』.pp. 47-48
- 朴钟锦. 2013a. 「韩国公共外交的主要途径及制约因素」. 『当代韩国』 01
pp.52-65.
- 2013b. 「中韩两国公共外交的深层障碍及应对之策」. 『学理论』
(36) pp.10-13.
- 李丹. 2016. 「韩国对华公共外交战略研究」. 『동북아문화연구』47권. pp.
259-270.
- 杨峻. 2020. 「日本国际交流基金语言推广的实施情况调查研究」.『延边大学
学报(社会科学版)』第53卷,第2期. pp.55-61
- 潘亚楠 · 王晓玲. 「从文化外交转向公共外交——以韩国通过《公共外交法
案》为例」. 『对外传播』(05) pp.77-78.
- 王圆. 2019. 「韩国官方开发援助(ODA)发展历史与现状探析」. 『东亚评
论』.(02)
- 詹德斌. 2013. 「韩国文化战略与文化外交」. 『国际研究参考』(11)
- 赵磊 幸尧 杜飞阳. 2013. 「世界变迁中的软实力建设」.『学习时报』
- 韩德睿. 2019. 「韩国对华公共外交战略：环境、目标和对象」. 『战略决策研

究』10(01). pp. 63-81+104.

吴苔. 2017. 「韩国对华公共外交研究 (2012-2016)」.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张永喆. 2020. 「21世纪以来韩国公共外交发展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戴淑婷. 2019. 「韩国非政府行为体对华公共外交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朱玲. 2014. 「韩国公共外交对国家形象的塑造」.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朴俊镐. 2014. 「韩国公共外交研究」. 东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辛兆义. 2015. 「史密斯-蒙特法及其修正案研究」. 东北师范大学. 博士学位论文

郭润萌. 2019. 「中国对韩国的公共外交研究」. 青岛大学 硕士学位论文

陈昱如. 2019. 「传统文化资源与韩国国家形象的塑造」. 华东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韩德睿. 2017. 「韩国对中国的公共外交战略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Jae Ho Chung. 2007.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Chapters 4 to 6, pp.29-74,138-158

Nye, J. S.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4-109.

Shaun Riordan. 2004. "Dialogue-based public diplomacy: A new foreign policy paradigm In The new public diplomacy". pp. 180-195.

-책

상용. 2015. 『문화입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김동호. 2019. 『대통령 경제사』 서울: 하다(HadA)

김화정. 2020.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낸시 스노우 • 필립 M. 테일러. 2009. 『21세기 공공외교 핸드북』 서울: 인가사랑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2016. 『한국형 공공외교 평가 모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그래서 공공외교가 뭔가요』

赵启正. 2014. 『公共外交战略』 北京: 学习出版社

韩方明. 2011. 『公共外交概论 (新编国际关系学系列教材)』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Berridge G R , James A. 2003. *A dictionary of diploma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Hans Tuch. 1990.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ew York: St.Martin's Press, 1990), p. 3

Nye, J. S.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London:
Basic Book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

Peter G.Peterson, Jennifer Sieg. 2002. *Public Diplomacy: A Strategy for Refor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정책자료

외교부.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외교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3

『2019 매력한국』 2019

『Hello, korea 문화외교』 2017, 2018

『공공외교 제도개선 및 하위법령 제정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16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2018, 2019, 2020

『공공외교안내서』 2017

『외교백서』 2016, 2017, 2018, 2019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2017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제5장 문화외교 pp.285-299. 2009

『한중공공외교백서 2010-2016』 2017

외교통상부.

『한국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2012

『문화외교 매뉴얼』 2010

한국국제교류재단.

『2019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 대양주)』 2019

해외문화홍보원.

『국가이미지 조사보고서』 2018 , 2019

U.S. Department of State, Cultural Diplomacy. 2005. “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ultural Diplomacy, 2005, p.1, p.4.

- 법

공공외교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1호, 2016. 2. 3. 제정]

<https://www.law.go.kr/>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6호, 2018. 12. 4., 일부 개정], <https://www.law.go.kr>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獨立行政法人國際交流基金法 平成十四年法

律第三百三十七 <https://www.jpf.go.jp/j/about/admin/guide/kikinhou.html>
스미스-몬트법/1948년 미국 정보와 교육 교류 Smith-Mundt Act/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https://www.usagm.gov/who-we-are/oversight/legislation/smith-mundt/>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LOI n° 2010-873 du 27
juillet 2010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22521532/2020-12-20/>

- 인터넷 자료

외교부 공식 웹 사이트

<http://www.mofa.go.kr>

외교부-공공외교 포털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http://www.mofa.go.kr/www/wpge/m_22713/contents.do/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policy/index0607.jsp>

한국공공외교협회

<https://koreapda.org>

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Simon Anholt. The Good Country Index,

<http://www.goodcountry.org/>

Future Brand. Country Index 2014-2015, 2019,

<https://www.futurebrand.com>

US news best countries Index,

<https://www.usnews.com>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 2019,

<http://www.weforum.org>

The World's Most Reputable Countries 2013, 2019,

<http://www.reputationinstitute.com>

Social Progress Imperative. Social Progress Index 2015, 2020,

<http://www.socialprogressimperative.org>

Public Diplomacy

<https://www.publicdiplomacy.org>

USC Center on Diplomacy

<https://uscpublicdiplomacy.org>

-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기사와 칼럼

Rosa. 2019.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 계획 [2017-2021] - ①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경과」.

https://blog.naver.com/rosa_5004/221520995050 (검색일: 2020.9.26.)

“제1회 동대문 DDP 공공외교주간에 참여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oz82/221385465021>(검색일:2020.08.12)

머니투데이뉴스, “‘한국 좋다’ 외국인보다 한국인의 긍정 평가 비율 높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8&aid=0004351365)

[103&sid2=245&oid=008&aid=000435136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5&oid=008&aid=0004351365)(검색일:2020.9.30)

연합뉴스. "국제교류재단, 해외사업 보다 사무소 유지에 예산…배보다 배꼽".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0054903Y>(검색일:

2020.10.12)

외교부. 박송희·한정연. “한국 공공외교의 도약, 그 방향을 모색한다”

<https://blog.naver.com/mofakr/220783221164>(검색일: 2020.08.26.)

정범선. 2017. 저성장시대, 어떻게 연락처 할 것인가? ① 저상장의 징후와

우리나라 저상장 기조의 특징

http://m.ufnews.co.kr/main/sub_news_detail.html?wr_id=4108(검색일:

2020.8.30.)

해문홍.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962>

(검색일: 2020.10.30.)

《美国之音为什么不能对内广播》.美国之音中文网.

[http://www.voachinese.com/content/a-21-w2009-05-24-voa43-6](http://www.voachinese.com/content/a-21-w2009-05-24-voa43-61362467/1026865.html)

[1362467/1026865.html](http://www.voachinese.com/content/a-21-w2009-05-24-voa43-61362467/1026865.html)(검색일: 2020.12.18.)

吴超. 2013. 「公共外交对中国和平崛起的意义分析」. 『理论探讨』 第8期

<http://www.chinapda.org/chn/xsdt/t1100407.htm>(검색일: 2020.4.17.)

作者未知, 李丹编译. 2013. 「公共外交纳入美国《2013年国防授权法案》」. 『南加大公共外交研究中心

http://uscpublicdiplomacy.org/index.php/about/cpd_news_detail/2013_national_defense_authorization_act_includes_important_pd_components/

(검색일: 2020.12.15)

Nye, J. S. 2008. Get Smart Combining Hard and Soft Power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2009-07-01/get-smart?page=1#author-info> (검색일: 2020.6.10)

Shawn Powers. U.S. International Broadcasting: An Untapped Resource for Domestic and Ethnic News Organization,

http://academia.edu/2271900/U.S._International_Broadcasting_An_Untapped_Resource_for_Domestic_and_Ethnic_News_Organization. (검색일: 2021.12.18)

부록 1 공공외교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3951호, 2016. 2. 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공공외교를 위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7. 그 밖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는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유사·중복을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별·국가별 현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도록 관계 기관 간에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과 제3항에 따른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의 내용 및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951호,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독립행정법인국제교류기금법

平成十四年法律第百三十七号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法

目次

第一章 総則（第一条－第六条）

第二章 役員及び職員（第七条－第十一条）

第三章 業務等（第十二条－第十六条）

第四章 雑則（第十七条－第二十一条）

第五章 罰則（第二十二条－第二十四条）

附則

第一章 総則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の名称、目的、業務の範囲等に関する事項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名称）

第二条 この法律及び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以下「通則法」という。）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設立される通則法 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の名称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とする。

（基金の目的）

第三条 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以下「基金」という。）は、国際文化交流事業を総合的かつ効率的に行うことにより、我が国に対する諸外国の理解を深め、国際相互理解を増進し、及び文化その他の分野において世界に貢献し、もって良好な国際環境の整備並びに我が国の調和ある対外関係の維持及び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中期目標管理法人）

第三条の二 基金は、通則法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中期目標管理法人とする。

（事務所）

第四条 基金は、主たる事務所を東京都に置く。

（資本金）

第五条 基金の資本金は、附則第三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政府から出資があったものとされた金額とする。

2 政府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予算で定める金額の範囲内において、基金に追加して出資することができる。

3 政府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土地又は建物その他の土地の定着物（第五項において「土地等」という。）を出資の目的として、基金に追加して出資することができる。

4 基金は、前二項の規定による政府の出資があったときは、その出資額により資本金を増加するものとする。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出資の目的とする土地等の価額は、出資の日現在における時価を基準として評価委員の評価した価額とする。

6 前項に規定する評価委員その他同項の評価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名称の使用制限）

第六条 基金でない者は、国際交流基金という名称を用いてはならない。

第二章 役員及び職員

（役員）

第七条 基金に、役員として、その長である理事長及び監事二人を置く。

2 基金に、役員として、理事三人以内を置くことができる。

（理事の職務及び権限等）

第八条 理事は、理事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理事長を補佐して基金の業務を掌理する。

2 通則法第十九条第二項の個別法で定める役員は、理事とする。ただし、理事が置かれていないときは、監事とする。

3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通則法第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理事長の職務を代理し又はその職務を行う監事は、その間、監事の職務を行ってはならない。

（理事の任期）

第九条 理事の任期は、四年とする。

(役員及び職員の秘密保持義務)

第十条 基金の役員及び職員は、職務上知ることのでき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その職を退いた後も、同様とする。

(役員及び職員の地位)

第十一条 基金の役員及び職員は、刑法(明治四十年法律第四十五号)その他の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公務に従事する職員とみなす。

第三章 業務等

(業務の範囲)

第十二条 基金は、第三条の目的を達成するため、次の業務を行う。

- 一 国際文化交流の目的をもって行う人物の派遣及び招へい
- 二 海外における日本研究に対する援助及びあっせん並びに日本語の普及
- 三 国際文化交流を目的とする催しの実施、援助及びあっせん並びにこれへの参加
- 四 日本文化を海外に紹介するための資料その他国際文化交流に必要な資料の作成、収集、交換及び頒布
- 五 国際文化交流を目的とする施設の整備に対する援助並びに国際文化交流のために用いられる物品の購入に関する援助及びこれらの物品の贈与
(基金が寄附を受けた物品の贈与に限る。)
- 六 国際文化交流を行うために必要な調査及び研究
- 七 前各号の業務に附帯する業務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の準用)

第十三条 補助金等に係る予算の執行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年法律第七十九号)の規定(罰則を含む。)は、前条第二号、第三号及び第五号の規定により基金が交付する助成金(政府以外の者からの寄附金のみを財源とするものを除く。)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二条第七項を除く。)中「各省各庁」とあるの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と、「各省各庁の長」とあるの

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の理事長」と、同法第二条第一項及び第四項、第七条第二項、第十九条第一項及び第二項、第二十四条並びに第三十三条中「国」とあるの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と、同法第十四条中「国の会計年度」とあるのは「独立行政法人国際交流基金の事業年度」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積立金の処分)

第十四条 基金は、通則法第二十九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中期目標の期間(以下この項において「中期目標の期間」という。)の最後の事業年度に係る通則法第四十四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整理を行った後、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積立金があるときは、その額に相当する金額のうち外務大臣の承認を受けた金額を、当該中期目標の期間の次の中期目標の期間に係る通則法第三十条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中期計画(同項後段の規定による変更の認可を受けたときは、その変更後のもの)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次の中期目標の期間における第十二条に規定する業務の財源に充てることができる。

2 基金は、前項に規定する積立金の額に相当する金額から同項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た金額を控除してなお残余があるときは、その残余の額を国庫に納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納付金の納付の手続その他積立金の処分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運用資金)

第十五条 基金は、業務の運営に必要な財源をその運用によって得るために運用資金を設け、附則第三条第六項後段の規定により外務大臣が示した金額及び第五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政府が出資した金額並びに運用資金に充てることを条件として政府以外の者から出えんされた金額の合計額に相当する金額をもってこれに充て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運用資金(以下「運用資金」という。)は、政令で定める場合を除くほか、取り崩してはならない。

(運用資金の運用)

第十六条 通則法第四十七条及び第六十七条(第七号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は、運用資金の運用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通則法第四十七条第三号中「金銭信託」とあるのは、「金銭信託で元本補填の契約があるもの」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基金は、支払が外国通貨で行われる事業の実施に必要な経費の財源を得ようとするときは、外貨建債券(外国通貨で表示される債券をいう。次項及び第十八条第二号において同じ。)の取得により運用資金を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外貨建債券の種類、外貨建債券の取得により運用することができる運用資金の限度額その他外貨建債券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外務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ものとする。

第四章 雑則

(緊急の必要がある場合の外務大臣の要求)

第十七条 外務大臣は、国際情勢の急激な変化により又は外国政府若しくは国際機関(国際会議その他国際協調の枠組みを含む。)の要請等を受けて、外交政策の遂行上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基金に対し、第十二条に規定する業務又は基金の外国にある事務所について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基金は、外務大臣から前項の規定による求めがあったときは、正当な理由がない限り、その求めに応じなければならない。

(財務大臣との協議)

第十八条 外務大臣は、次の場合には、財務大臣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承認をしようとするとき。

二 第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外貨建債券に関する事項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

(主務大臣等)

第十九条 基金に係る通則法における主務大臣及び主務省令は、それぞれ外務大臣及び外務省令とする。

(国家公務員宿舎法の適用除外)

第二十条 国家公務員宿舎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十七号) の規定は、基金の役員及び職員には適用しない。

第二十一条 削除

第五章 罰則

第二十二条 第十条の規定に違反して秘密を漏ら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三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基金の役員は、二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一 第十二条に規定する業務以外の業務を行ったとき。

二 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外務大臣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場合において、その承認を受けなかったとき。

三 第十五条第二項の規定に違反して運用資金を取り崩したとき。

四 第十六条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通則法第四十七条の規定に違反して運用資金を運用したとき。

五 第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外務大臣が定めた事項に違反して運用資金を運用したとき。

第二十四条 第六条の規定に違反した者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附 則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六条及び第二十四条並びに附則第五条から第七条まで及び第九条から第十一条までの規定は、平成十五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持分の払戻し)

第二条 国際交流基金は、国際交流基金法(昭和四十七年法律第四十八号) 第五条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国際交流基金の解散の日の前日までに、

国際交流基金に出資した政府以外の者に対し、当該持分に係る出資額に相当する金額により持分の払戻しをす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国際交流基金は、その払戻しをした金額により資本金を減少するものとする。
(国際交流基金の解散等)

第三条 国際交流基金(以下この条において「旧基金」という。)は、基金の成立の時ににおいて解散するものとし、その一切の権利及び義務は、次項の規定により国が承継する資産を除き、その時ににおいて基金が承継する。

2 基金の成立の際現に旧基金が有する権利のうち、基金がその業務を確実に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資産以外の資産は、基金の成立の時ににおいて国が承継す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国が承継する資産の範囲その他当該資産の国への承継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4 旧基金の平成十五年四月一日に始まる事業年度は、旧基金の解散の日の前日に終わるものとする。

5 旧基金の平成十五年四月一日に始まる事業年度に係る決算並びに財産目録、貸借対照表及び損益計算書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6 第一項の規定により基金が旧基金の権利及び義務を承継したときは、その承継の際、基金が承継する資産の価額(政府以外の者から旧基金に入えんされた金額のうち外務大臣が財務大臣と協議して定める金額及び基金の最初の中期目標の期間における業務の財源に充てる金額として外務大臣が財務大臣と協議して定める金額を除く。)から負債の金額を差し引いた額は、政府から基金に出資されたもの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外務大臣は、財務大臣と協議の上、当該出資のうち、第十五条に規定する運用資金に充てるべきものの金額を示すものとする。

7 前項の資産の価額は、基金の成立の日現在における時価を基準として評価委員が評価した価額とする。

8 前項の評価委員その他評価に関し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9 旧基金の解散については、国際交流基金法第三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残余財産の分配は、行わない。

10 第一項の規定により旧基金が解散した場合における解散の登記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

(国有財産の無償使用)

第四条 外務大臣は、基金の成立の日の前日において現に外務省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九十四号）第四条第一号ニ及び第十六号に掲げる事務の用に供されている国有財産であっ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基金の用に供するため、基金に無償で使用させることができる。

(国際交流基金法の廃止)

第五条 国際交流基金法は、廃止する。

(国際交流基金法の廃止に伴う経過措置)

第六条 前条の規定の施行前に国際交流基金法（第十二条を除く。）の規定によりした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は、通則法又はこの法律の相当する規定によりした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とみなす。

第七条 附則第五条の規定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附則第三条第五項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政令への委任)

第八条 附則第二条から第四条まで及び前二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基金の設立に伴い必要な経過措置その他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附 則（平成一六年六月一八日法律第一二六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一及び二略

三 附則第四十二条の規定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

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三十号）の公布の日又は公布日のいずれか遅い日

附 則（平成一六年六月一八日法律第一二七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協定の効力発生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略

二 附則第三条の規定 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三十号）の公布の日又は公布日のいずれか遅い日

附 則（平成一六年六月二三日法律第一三〇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平成十六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略

二 第二条、第七条、第十条、第十三条及び第十八条並びに附則第九条から第十五条まで、第二十八条から第三十六条まで、第三十八条から第七十六条の二まで、第七十九条及び第八十一条の規定 平成十七年四月一日

附 則（平成一六年六月二三日法律第一三五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略

二 附則第十七条の規定 この法律の公布の日又は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三十号）の公布の日
の日のいずれか遅い日

附 則（平成二六年六月一三日法律第六七号）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独立行政法人通則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十六年法律第六十六号。以下「通則法改正法」という。）の施行の日から施

行する。ただし、次の各号に掲げる規定は、当該各号に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一 附則第十四条第二項、第十八条及び第三十条の規定 公布の日
(処分等の効力)

第二十八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この法律による改正前のそれぞれの法律 (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 の規定によってした又はすべき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であって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それぞれの法律 (これに基づく命令を含む。以下この条において「新法令」という。) に相当の規定があるものは、法律 (これに基づく政令を含む。) に別段の定めのあるものを除き、新法令の相当の規定によってした又はすべき処分、手続その他の行為とみなす。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十九条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その効力を有することとされる場合におけるこの法律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その他の経過措置の政令等への委任)

第三十条 附則第三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必要な経過措置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 は、政令 (人事院の所掌する事項については、人事院規則) で定める。

부록 3 스미스-몬트법/1948년 미국 정보와 교육 교류법

Smith–Mundt Act/U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PUBLIC LAWS-CHS. 35,36JAN. 27,1948

thoroughly, once each year, the United States Soldiers' Home, 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its records, accounts, management, discipline, and sanitary condition,
and shall report thereon in writing to the Secretary of the Army, including in his
report such suggestions as he desires to make."

Approved January 27, 1948.

AN ACT

To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o strengthen coope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 assembled,*

I-SHORT TITLE, OBJECTIVES, AND DEFINITIONS

SHORT TITLE

SECTION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Act of 1948".

OBJECTIVES

SEC. 2. The Congress hereby declares that the objectives of this Act are to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nited States in other countries, and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 of other countries. Among the means to
be used in achieving these objectives are—

(1) an information service to disseminate abroad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its people, and policies promulgated by the Congress, the President, the Secretary of State and other responsible officials of Government having to do with matters affecting foreign affairs;

(2) an educational exchange service to cooperate with other nations in—

(a) the interchange of persons, knowledge, and skills;

(b) the rendering of technical and other services;

(c) the interchange of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arts, and sciences.

UNITED NATIONS

SEC. 3. In carrying out the objectives of this Act, information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Nations, its organizations and functions, shall be emphasized.

DEFINITIONS

SEC. 4. When used in this Act, the term—

(1) “Secretary” means the Secretary of State.

(2) “Department” means the Department of State.

(3) “Government agency” means any executive department, board, bureau, commission, or other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r any corporation wholly owned (either directly or through one or more corporations) by the United States.

II-INTERCHANGE OF PERSONS, KNOWLEDGE AND SKILLS

PERSONS

SEC. 201.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interchanges on a reciprocal basi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of students, trainees, teachers, guest instructors, professors, and leaders in fields of specialized knowledge or skill and shall wherever possible provide these interchanges by using the services of existing reputable agencies which are successfully engaged in such activity.

The Secretary may provide for orientation courses and other appropriate services for such persons from other countries upon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such persons going to other countries from the United States. When any country fails or refuses to cooperate in such program on a basis of reciprocity the Secretary shall terminate or limit such program, with respect to such country, to the extent he deems to be advisable i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section shall be admitted as nonimmigrant visitors for business under clause 2 of section 3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4, as amended (43 Stat. 154; 8 U. S. C. 203), for such time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s promulg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ttorney General. A person admitted under this section who fails to maintain the status under which he was admitted or who fails to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at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which he was admitted, or who engages in activities of a political nature detrimental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in activities not consistent with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upon the warrant of the Attorney General, be taken into custody and promptly deported pursuant to section 14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4 (43 Stat. 162, 8 U. S. C. 214). Deportation proceedings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mmary and the findings of the Attorney General as to matters of fact shall be conclusive. Such persons shall not be eligible for suspension of deportation under clause 2 of subdivision (c) of section 19 of the Immigration Act of February 5, 1917 (54 Stat. 671, 56 Stat. 1044; 8 U. S. C. 155).

BOOKS AND MATERIALS

SEC. 202.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interchan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of books and periodicals, including government publications, for the translation of such writings, and for the preparation, distribution, and interchange of other educational materials.

INSTITUTIONS

SEC. 203.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provide for assistance to schools, libraries, and community centers abroad, founded or sponsored by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serving as demonstration centers for methods and practices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In assisting any such schools, however, the Secretary shall exercise no control over their educational policies and shall in no case furnish assistance of any character which is not in keeping with the free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establishe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II-ASSIGNMENT OF SPECIALISTS

PERSONS TO BE ASSIGNED

SEC. 301. The Secretary is authorized, when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is desirous of obtaining the services of a person having special scientific or other technical o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rom time to time to assign or authorize the assignment for service, to or in cooperation with such government,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n the employ or servic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who has such qualifications,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ment agency in which such person is employed or serving. No person shall be assigned for service to or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any country unless (1) the Secretary finds that such assignment is necessary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r (2) such government agrees to reimburse the United States in an amount equal to the compensation, travel expenses, and allowances payable to such person during the period of such assig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02, or (3) such government shall have made an advance of funds, property, or services as

provided in section 902. Nothing in this Act, however, shall authorize the assignment of such personnel for service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training, operation, development, or combat equipment of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government.

STATUS AND ALLOWANCES

SEC. 302.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ile assigned for service to or in cooperation with another government under the authority of this Act, shall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his rights, allowances, and privileges as such,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Government agency from which assigned and he shall continue to receive compensation from that agency. He may also receive,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President may prescribe, representation allowances similar to those allowed under section 901 (3) of the Foreign Service Act of 1946 (60 Stat. 999) . The authorization of such allowances and other benefits and the payment thereof out of any appropriations available therefore shall be considered as meeting all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65 of the Revised Statutes.

ACCEPTANCE OF OFFICE UNDER ANOTHER GOVERNMENT

SEC. 303.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ile assigned for service to or in cooperation with another government under authority of this Act may, at the discretion of his Government agency,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ecretary, and without additional compensation therefore, accept an office under the government to which he is assigned, if the acceptance of such an office in the opinion of such agency is necessary to permit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duties for which he is assigned, including the making or approving on behalf of such foreign government the disbursement of funds provided by such government or of receiving from such foreign government funds for deposit and disbursement on behalf of such government, in carrying out program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ct: Provided,

however, That such acceptance of office shall in no case involve the taking of an oath of allegiance to another government.

IV-PARTICIPATION BY GOVERNMENT AGENCIES

GENERAL AUTHORITY

SEC. 401. The Secretary is authorized, in carrying on any activity under the authority of this Act, to utilize, with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the services, facilities, and personnel of the other Government agencies. Whenever the Secretary shall use the services, facilities, or personnel of any Government agency for activities under authority of this Act, the Secretary shall pay for such performance out of funds available to the Secretary under this Act, either in advance, by reimbursement, or direct transfer. The Secretary shall include in each report submitted to the Congress under section 1008 a statement of the services, facilities, and personnel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utilized in carrying on activities under the authority of this Act, showing the names and salaries of the personnel utilized, or performing services utilize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such report, and the amounts paid to such other agencies under this section as payment for such performance.

TECHNICAL AND OTHER SERVICES

SEC. 402. A Government agency, at the request of the Secretary, may perform such technical or other services as such agency may be competent to render for the government of another country desirous of obtaining such services, up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satisfactory to the Secretary and to the head of the Government agency, when it i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that such services will contribute to the purposes of this Act. However, nothing in this Act shall authorize the performance of servic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training, operation, development, or Combat equipment of the armed forces of a foreign government.

POLICY GOVERNING SERVICES

SEC. 403. In authorizing the performance of technical and other services under this title, it is the sense of the Congress (1) that the Secretary shall encourage through any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th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to foreign governments by qualified private American individuals and agencies, and shall not enter into th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to any foreign government where such services may be performed adequately by qualified private American individuals and agencies and such qualified individuals and agencies are available for the performance of such services; (2) that if such services are rendered by a Government agency they shall demonstrate the technical accomplishments of the United States, such services being of an advisory, investigative, or instructional nature, or a demonstration of a technical process (3) that such services shall not include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or the supervision of the construction of public works, and that, under authority of this Act, a Government agency shall render engineering services related to public works only when the Secretary shall determine that the national interest demands the rendering of such services by a Government agency, but this policy shall not be interpreted to preclude the assignment of individual specialists as advisers to other, governments as provided under Section III of this Act, together with such incidental assistance as may be necessary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ir individual assignments.

V-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ABROAD

GENERAL AUTHORIZATION

SEC. 501. The Secretary is authorized, when he finds it appropriate, to provide for the preparation, and dissemination abroad, of information about the United States, its people, and its policies, through press, publications, radio, motion pictures, and other information media, and through information centers and instructors abroad. Any such press release or radio script, on request, shall be available in the English

language at the Department of State, at all reasonable times following its release as information abroad, for examination by representatives of United States press associations, newspapers, magazines, radio systems, and stations, and, on request, shall be made available to Members of Congress.

POLICIES GOVERNING INFORMATION ACTIVITIES

SEC. 502. In authorizing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under this Act, it is the sense of the Congress (1) that the Secretary shall reduce such Government information activities whenever corresponding private information dissemination is found to be adequate; (2) that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give the Department a monopoly in the production or sponsorship on the air of short-wave broadcasting programs, or a monopoly in any other medium of information.

VI-ADVISORY COMMISSIONS TO FORMULATE POLICIES

SEC. 601. There are hereby created two advisory commissions, (1) 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Information (hereinafter in this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2) United States Advisory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hange (hereinafter in this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hange) to be constituted as provided in section 602. The Commissions shall formulate and recommend to the Secretary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carrying out of this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commissions created by this section shall have no authority over the Board of Foreign Scholarships or the program created by Public Law 584 of the Seventy-ninth Congress, enacted August 1, 1946, or the United States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MEMBERSHIP OF THE COMMISSIONS; GENERAL PROVISIONS

SEC. 602. (a) Each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not more than three of whom shall be from any one political party.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No person holding any

compensated Federal or State office shall be eligible for appointment.

(b)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on Information shall represent the public interest, and shall be selected from a cross section of professional, business, and public service backgrounds.

(c)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hange shall represent the public interest and shall be selected from a cross section of educational, cultural, scientific, technical, and public service backgrounds.

(d) The term of each member appointed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three years, except that the terms of office of such members first taking office on each Commission shall expire, as designated by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appointment, two at the end of one year, two at the end of two years, and one at the end of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y member appointed to fill a vacancy occurring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for which his predecessor is appointed shall be appointed for the remainder of such term. Upon the expiration of his term of office any member may continue to serve until his successor is appointed and has qualified.

(e) The President shall designate a chairman for each Commission from among members of the Commission.

(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s shall receive no compensation for their services as such members but shall be entitled to reimbursement for travel and subsistence in connection with attendance of meetings of the Commissions away from their places of residences, as provided in subsection (6) of section 801 of this Act.

(g) The Commissions are authorized to adopt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they may deem necessary to carry out the authority conferred upon them by this title.

(h) The Department is authorized to provide the necessary secretarial and clerical assistance for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AND REPORTS

SEC. 603. The Commissions shall meet 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each month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fter their establishment, and thereafter at such intervals as the Commissions find advisable, and shall transmit to the Secretary a quarterly report, and to the Congress a semiannual report of all programs and activities carried on under the authority of this Act, including appraisals, where feasible,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al programs, and such recommendations as shall have been made by the Commissions to the Secretary for effectuating the purposes and objectives of this Act and the action taken to carry out such recommendations.

VII-APPROPRIATIONS

GENERAL AUTHORIZATION

SEC. 701. Appropriations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hereby authorized.

TRANSFER OF FUNDS

SEC. 702. The Secretary shall authorize the transfer to other Government agencies for expendi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any part of any appropriations available to the Department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for direct expenditure or as a working fund, and any such expenditures may be made under the specific authority contained in this Act or under the authority governing the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agency to which a part of any such appropriation is transferred, provided the activities come within the scope of this Act.

VIII-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SECRETARY

SEC. 801. In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the Secretary is authorized, in addition to and not in limitation of the authority otherwise vested in him—

- (1) In carrying out Section II of this Act, within the limitation of such appropriations as the Congress may provide, to make grants of money, services, or materials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governmental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and to individuals and public or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other countries;
- (2) to furnish, sell, or rent, by contract or otherwise, educational and information materials and equipment for dissemination to, or use by, peoples of foreign countries;
- (3) whenever necessary in carrying out Section V of this Act, to purchase, rent, construct, improve, maintain, and operate facilities for radio transmission and reception, including the leasing of real property both within and without the continent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for periods not to exceed ten years, or for longer periods if provided for by the appropriation Act;
- (4) to provide for printing and binding outside the continent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without regard to section 11 of the Act of March 1, 1919 (44 U. S. C. 111);
- (5) to employ, without regard to the civil-service and classification laws, when such employment is provided for by the appropriation Act, (i) persons on a temporary basis, and (ii) aliens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such employment of aliens shall be limited to services related to the translation or narration of colloquial speech in foreign languages when suitably qualified United States citizens are not available; and

(6) to create,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 on Information and the Commission on Educational Exchange, such advisory committees as the Secretary may decide to be of assistance in formulating his policies for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No committee member shall be allowed any salary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but he may be paid his actual transportation expenses, and not to exceed \$10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and other expenses, while away from his home in attendance upon meetings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under instructions.

GOVERNMENT AGENCIES

SEC. 802. In carrying on activities which further the purposes of this Act, subject to approval of such activities by the Secretary, the Department and the other Government agencies are authorized—

(1) to place orders and make purchases and rentals of materials and equipment;

(2) to make contracts, including contracts with governmental agencies, foreign or domestic, including subdivisions thereof, and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and, with respect to contracts entered into in foreign countries, without regard to section 3741 of the Revised Statutes (41 U. S. C. 22);

(3) under such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may prescribe, to pay the transportation expenses, and not to exceed \$10 per diem in lieu of subsistence and other expenses, of citizens or subjects of other countries, without regard to the Standardized Government Travel Regulations and the Subsistence Act of 1926, as amended; and

(4) to make grants for, and to pay expenses incident to, training and study.

**MAXIMUM USE OF EXISTING GOVERNMENT PROPERTY AND
FACILITIES**

SEC. 803. In carrying on activities under this Act which require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property and facilities, maximum use shall be made of existing Government property and facilities.

IX-FUNDS PROVIDED BY OTHER SOURCES

REIMBURSEMENT

SEC. 901. The Secretary shall, when he finds it in the public interest, request and accept reimbursement from any cooperating governmental or private source in a foreign country, or from State or local governmental institutions or private sources in the United States, for all or part of the expenses of any portion of the program undertaken hereunder. The amounts so received shall be covered into the Treasury as miscellaneous receipts.

ADVANCE OF FUNDS

SEC. 902. If any other government shall express the desire to provide funds, property, or services to be used by this Government, in whole or in part, for the expenses of any specific part of the program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ct, the Secretary is authorized, when he finds it in the public interest, to accept such funds, property, or services. Funds so received may be established as a special deposit account in the Treasury of the United States, to be available for the specified purpose, and to be used for reimbursement of appropriations or direct expenditu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y unexpended balance of the special deposit account and other property received under this section and no longer required for the purposes for which provided shall be returned to the government providing the funds or property.

X-MISCELLANEOUS

LOYALTY CHECK ON PERSONNEL

SEC. 1001. No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now in the employ of the Government, may be employed or assigned to duties by the Government under this Act until such individual has been investigated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and a report thereon has been made to the Secretary of State: Provided, however, that any present employee of the Government, pending the report as to such employee by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may be employed or assigned to duties under this Act for the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its enactment.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ny officer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DELEGATION OF AUTHORITY

SEC. 1002. The Secretary may delegate, to such officers of the Government as the Secretary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any of the powers conferred upon him by this Act to the extent that he finds such delegation to be in the interest of the purposes expressed in this Act and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program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Act.

RESTRICTED INFORMATION

SEC. 1003. Nothing in this Act shall authorize the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or knowledge in any case in which such disclosure (1) is prohibited by any other law of the United States, or (2) is inconsistent with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REPEAL OF ACT OF MAY 25, 1938, AS AMENDED

SEC. 1004. (a) The Act of May 25, 1938, entitled "An Act authorizing the temporary detail of United States employees, possessing special qualifications, to governments of American Republics and the Philippines, and for other purposes," as amended (52 Stat. 442; 53 Stat. 652), is hereby repealed.

(b) Existing Executive order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administration of such Act of May 25, 1938, as amende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perseded by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c) Any reference in the Foreign Service Act of 1946 (60 Stat. 999), or in any other law, to provisions of such Act of May 25, 1938, as amended, shall be construed to be applicable to the appropriate provisions of titles III and IX of this Act.

UTILIZATION OF PRIVATE AGENCIES

SEC. 1005. In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Act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ecretary to utilize,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the services and facilities of private agencies, including existing American press, publishing, radio, motion picture, and other agencies, through contractual arrangements or otherwise. It is the intent of Congress that the Secretary shall encourage participation in carrying out the purposes of this Act by the maximum number of different private agencies in each field consistent with the present or potential market for their services in each country.

TERMINATION PURSUANT TO CONCURRENT RESOLUTION OF CONGRESS

SEC. 1006. The authority granted under this Act shall terminate whenever such termination is directed by concurrent resolution of the two Houses of the Congress.

VETERANS' PREFERENCE ACT

SEC. 1007. No provision of this Act shall be construed to modify or to repeal the provisions of the Veterans' Preference Act of 1944.

REPORTS TO CONGRESS

SEC. 1008. The Secretary shall submit to the Congress semiannual reports of

expenditures made and activities carried on under authority of this Act, inclusive of appraisals and measurements, where feasible, as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everal programs in each country where conducted.

**REGULATORY PROVISIONS TO APPLY TO ALL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AND
EDUCATIONAL EXCHANGES OF STATE DEPARTMENT**

SEC. 1009. All provisions in this Act regulating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ctivities and educational exchanges provided herein, shall apply to all such international activities under jurisdiction of the Department of State.

SEPARABILITY OF PROVISIONS

SEC. 1010. If any provision of this Act 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shall be held invalid, the validity of the remainder of the Act and the applicability of such provision to other person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부록 4 프랑스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2010년 7월 27일자 법률’
LOI n° 2010-873 du 27 juillet 2010 relative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ont adopté,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a loi dont la teneur suit :

TITRE IER : DISPOSITIONS RELATIVES AUX E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A L’ACTION EXTERIEURE DE LA FRANCE

CHAPITRE IER : DISPOSITIONS GENERALES

Article 1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ont pour mission de promouvoir la présence et l'influence de la France à l'étranger et de participer à l'action extérieure de l'Etat, notamment par la mise en œuvre à l'étranger d'actions culturelles, de coopération et de partenariat et par la gestion de moyens nécessaires à cette action.

Ces établissements publics sont placés sous la tutelle de l'Etat. Ils sont créés par un décret en Conseil d'Etat qui précise leurs missions et leurs modalité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Une convention pluriannuelle conclue entre l'Etat, représenté par les ministres concernés, et chaque établissement public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représenté par le président de son conseil d'administration, définit, au regard des stratégies fixées, les objectifs et les moyens nécessaires à la mise en œuvre de ses missions. Le projet de convention est transmis par le Gouvernement, avant sa signature, aux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u Sénat. Ces commissions peuvent formuler un avis sur ce projet de convention dans un délai de six semaines.

Au titre de leurs missions, ces établissements publics peuvent contribuer aux

travaux d'instituts indépendants de recherche, en leur assurant le concours d'agents publics placés auprès de ces établissements par l'Etat.

Pour l'accomplissement de leurs missions, ces établissements peuvent disposer de bureaux à l'étranger qui peuvent faire partie des missions diplomatiques. Là où ils ne disposent pas de bureaux, ils font appel aux missions diplomatiques. Leur action à l'étranger s'exerce sous l'autorité des chefs de mission diplomatique, dans le cadre de la mission de coordination et d'animation de ces derniers et sans préjudice des particularités de leur action relevant des dispositions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Article 2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sont administrés par un conseil d'administration.

Le conseil d'administration comprend :

- 1° Deux députés et deux sénateurs désignés par les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u Sénat ;
- 2° Des représentants de l'Etat ;
- 3° Des personnalités qualifiées désignées par l'Etat ;
- 4° Des représentants élus du personnel.

Le conseil d'administration des établissements publics qui reçoivent le concour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organismes partenaires pour accomplir leurs missions comprend des représentants de ces collectivités et organism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ne sont pas soumis au chapitre Ier du titre II de la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Article 3

Les ressourc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comprennent :

- 1° Les dotations de l'Etat ;
- 2° Les recettes provenant de l'exercice de leurs activités ;
- 3° Les subventions et contributions d'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de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 tous organismes publics et privés ;
- 4° Le revenu des biens meubles et immeubles ainsi que le produit de leur aliénation ;
- 5° Le produit des participations et placements financiers, des intérêts et du remboursement de prêts ou avances ;
- 6° Les recettes issues du mécénat ;
- 7° Les dons, legs et recettes diverses ;
- 8° Les emprunts.

Article 4

Par dérogation au II des articles 42 de la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61-1 de la loi n° 84-53 du 26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territoriale et 49 de la loi n° 86-33 du 9 janvier 1986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hospitalière, peuvent ne pas donner lieu à remboursement les mises à disposition de fonctionnaires auprè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en vue d'y exercer des missions d'intérêt public dans les deux années qui suivent la création de ces établissements publics ou, ultérieurement, pour une durée qui ne peut excéder six mois.

Article 5

Les établissements publics contribuant à l'action extérieure de la France transmettent un rapport annuel de leurs activités à l'Assemblée des Français de l'étranger.

CHAPITRE II : L'E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Article 6

I. — Il est créé 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dénommé « Campus France », placé sous la tutelle conjointe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ministre charg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soumis au chapitre Ier.

II. —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a notamment pour missions :

1° La valorisation et la promotion à l'étranger du système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français, y compris par le suivi régulier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ayant accompli tout ou partie de leur cursus dans le système français d'enseignement ou le réseau d'enseignement français à l'étranger ;

2° L'accueil des étudiants et chercheurs étrangers, y compris l'aide à la délivrance des visas et l'hébergement, en appui aux universités, aux écoles et aux autr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recherche, ainsi qu'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3° La gestion de bourses, de stages et d'autres programmes de la mobilité internationale des étudiants et des chercheurs ;

4° La promotion et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dispensé au moyen des nouvell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exerce ses missions selon les orientations définies conjointement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le ministre chargé de l'enseignement supérieur.

Il veille à répondre aux besoins exprimés par le réseau diplomatique à l'étranger. Il collabore avec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s universités, les écoles et les autr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recherche et les organisations concernées, ainsi qu'avec des partenaires publics et privés. Pour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il fait appel

au réseau diplomatique à l'étranger, sous l'autorité des chefs de mission diplomatique, et aux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eur autorité ou qui sont liés par convention aux missions diplomatiques.

III. —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se substitue, à la date d'effet de leur dissolution, à l'association Egide et a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Campus France dans tous les contrats et conventions passés pour l'accomplissement de leurs missions.

A la date d'effet de la dissolution de l'association Egide et d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Campus France, leurs biens, droits et obligations sont transférés de plein droit et en pleine propriété à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Ces transferts sont effectués à titre gratuit et ne donnent lieu ni à indemnité, ni à perception d'impôts, droits ou taxes, ni au versement de salaires ou honoraires au profit de l'Etat, de ses agents ou de toute autre personne publique.

IV. —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est substitué à l'association Egide et a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Campus France à la date d'effet de leur dissolution pour les personnels titulaires d'un contrat de droit public ou de droit privé conclu avec l'un de ces organismes en vigueur à cette date. Il leur propose un contrat régi par le code du travail. Ce contrat reprend les clauses substantielles du contrat dont les agents étaient titulaires antérieurement au transfert, en particulier celles qui concernent la rémunération.

Les agents concernés disposent d'un délai de trois mois pour accepter le contrat proposé à la suite du transfert d'activité. En cas de refus de ces agents, leur contrat prend fin de plein droit et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applique les dispositions de droit public relatives aux agents licenciés.

Les salariés dont le contrat de travail est transféré demeurent à titre transitoire régis par la convention ou l'accord collectif qui leur est applicable. La convention nationale applicable à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leur devient applicable

dès que les adaptations nécessaires ont fait l'objet d'un accord ou, au plus tard, quinze mois après leur transfert.

Article 7

Est créé auprès de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un conseil d'orientation relatif aux modalités d'accueil des étudiants et chercheurs étrangers en France, comprenant notamment des représentants des étudiants, de la Conférence des chefs d'établissemen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Sa composition et s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sont fixées par décret

Article 8

L'ensemble des activités internationales du Centre national des œ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est intégré à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selon des modalités et un calendrier prévus par un décret à l'issue d'un rapport remis par le Gouvernement avant le 1er juin 2011 aux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u Sénat.

A la date d'intégration des activités internationales du Centre national des œ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à l'établissement public Campus France et au plus tard le 31 décembre 2011, les biens, droits et obligations liés à ces activités sont transférés de plein droit et en pleine propriété à l'établissement public sans perception d'impôts, de droits ou de taxes.

CHAPITRE III : L'INSTITUT FRANCAIS

Article 9

Modifié par LOI n°2016-925 du 7 juillet 2016 - art. 108

I. — Il est créé 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pour l'action culturelle extérieure, dénommé Institut français , placé sous la tutelle

conjointe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et soumis au chapitre Ier.

II. — S'inscrivant dans l'ambition de la France de contribuer à l'étranger à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inguistique dans un esprit de partenariat avec les pays d'accueil, l'Institut français concourt, en faisant appel au réseau culturel français à l'étranger, à la politique culturelle extérieure définie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n étroite concertation avec les ministres concernés, en particulie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L'Institut français a notamment pour missions :

- 1° La promotion et l'accompagnement à l'étranger de la culture française ;
- 2° Le développement des échanges avec les cultures européennes, francophones et étrangères ;
- 3° Le soutien à la création, au développement et à la diffusion des expressions artistiques du Sud, ainsi que leur promotion et leur diffusion en France et à l'étranger ;
- 4° La diffusion du patrimoin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 en concertation étroite avec les organismes compétents dans ces domaines ;
- 5° La promotion et l'accompagnement à l'étranger des idées, des savoirs et de la culture scientifique français ;
- 6° Le soutien à une large circulation des écrits, des œuvres et des auteurs, en particulier francophones ;
- 7° La promotion, la diffusion et l'enseignement à l'étranger de la langue française ;
- 8° L'information du réseau culturel français à l'étranger, des institutions et des professionnels étrangers sur l'offre culturelle française ;
- 9° Le conseil et la formation professionnels des personnels français et étrangers concourant à ces missions, et notamment des personnels du réseau culturel français à l'étranger, en liaison avec les organismes compétents. A ce titre, l'institut est associé à la politique de recrutement, d'affectation et de gestion des carrières de ces personnels.

L'Institut français exerce ses missions selon les orientations définies conjointement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Il opère sans préjudice des missions des organismes compétents en matière de promotion et d'exportation intervenant dans les domaines spécifiques mentionnés au présent article et en complémentarité avec ceux-ci, et dans une concertation étroite avec tous les opérateurs, qu'ils soient publics, associatifs ou privés. Il veille à répondre aux besoins exprimés par le réseau diplomatique à l'étranger.

L'Institut français collabore avec les organisations internationales et européenne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notamment les départements et collectivités d'outre-mer, les organisations professionnelles concernées par l'exportation des industries culturelles françaises, les institutions de création et de diffusion culturelle françaises et étrangères, ainsi qu'avec des partenaires publics et privés, dont les alliances françaises.

Pour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il fait appel au réseau diplomatique à l'étranger, sous l'autorité des chefs de mission diplomatique, et aux établissements placés sous leur autorité ou qui sont liés par convention aux missions diplomatiques.

L'Institut français concourt à l'animation et à la gestion du réseau culturel. Il émet un avis sur la programmation des activités des établissements culturels français à l'étranger, sur les nominations et les évaluations des agents du réseau culturel, sur l'allocation des moyens humains, financiers et immobiliers dont dispose le réseau ainsi que sur leur répartition géographique. Ces dispositions sont précisées dans le décret en Conseil d'Etat mentionné à l'article 1er.

III. — L'Institut français se substitue à l'association CulturesFrance, à la date d'effet de sa dissolution, dans tous les contrats et conventions passés par cette dernière pour l'accomplissement de ses missions.

Les biens, droits et obligations de l'association CulturesFrance sont transférés de plein droit et en pleine propriété à l'Institut français à la date d'effet de sa

dissolution.

Ces transferts sont effectués à titre gratuit et ne donnent lieu ni à indemnité, ni à perception d'impôts, droits ou taxes, ni au versement de salaires ou honoraires.

IV. — L'Institut français est substitué à l'association CulturesFrance à la date d'effet de sa dissolution, pour les personnels titulaires d'un contrat de travail de droit public ou de droit privé conclu avec cet organisme en vigueur à cette date. Il leur propose un contrat régi par le code du travail. Ce contrat reprend les clauses substantielles du contrat dont les agents étaient titulaires antérieurement au transfert, en particulier celles qui concernent la rémunération.

Les agents concernés disposent d'un délai de trois mois pour accepter le contrat qui leur est proposé à la suite du transfert d'activité. En cas de refus de ces agents, leur contrat prend fin de plein droit et l'Institut français applique les dispositions de droit public relatives aux agents licenciés.

Les salariés dont le contrat de travail est transféré demeurent à titre transitoire régis par la convention ou l'accord collectif qui leur est applicable. La convention nationale applicable à l'Institut français leur devient applicable dès que les adaptations nécessaires ont fait l'objet d'un accord ou, au plus tard, quinze mois après leur transfert.

Article 10

Modifié par LOI n°2016-925 du 7 juillet 2016 - art. 108

Pour l'élaboration des stratégies de rayonnement de la culture et de la langue françaises à l'étrange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réunissent, au moins une fois par an, un 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qu'ils président conjointement et auquel participent des représentants de l'ensemble des ministères concernés. Ce conseil est également composé de personnalités qualifiées désignées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par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notamment des représentant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u Séna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alliances françaises, ainsi que d'une personnalité représentative des cultures numériques.

Le champ d'intervention du conseil d'orientation comprend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A ce titre, le président de la société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y est associé.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le ministre chargé de la culture invitent le président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Institut français à participer au conseil d'orientation stratégique.

Article 11

Pendant un délai de trois ans à compter de la promulgation de la présente loi, le Gouvernement conduit une expérimentation du rattachement à l'Institut français du réseau culturel de la France à l'étranger. Dans un délai ne pouvant excéder six mois à compter de la publication de la présente loi,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désigne des missions diplomatiques, dont le nombre ne peut être inférieur à dix, choisies pour constituer un échantillon représentatif de la diversité des postes en termes d'effectifs, de moyens et d'implantation géographique.

Chaque année jusqu'au terme de ce délai de trois ans, le Gouvernement remet aux commissions permanentes compétentes de l'Assemblée nationale et du Sénat un rapport d'évaluation prospective des résultats de cette expérimentation.

Si le Gouvernement décide, au terme de l'expérimentation, qu'elle n'est pas concluante, dès lors que des personnels ont changé de statut dans le cadre de l'expérimentation, leur rétablissement dans leur statut initial est de droit.

Les modalités de ce rétablissement et la liste des postes concernés sont déterminées par voie réglementaire.

Un cahier des charges conclu entre l'Institut français et sa tutelle précise les modalités de cette expérimentation et de son suivi régulier.

CHAPITRE IV : AGENCE FRANC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Article 12

Modifié par LOI n°2014-773 du 7 juillet 2014 - art. 13

I.-Il est créé un 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dénommé : " 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 placé sous la tutelle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ministre chargé de l'économie et soumis au chapitre Ier du présent titre.

II.-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concourt à la promotion de l'assistance technique et de l'expertise internationale publique françaises à l'étranger. Elle contribue notamment au développement de l'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et à la maîtrise d'œuvre de projets de coopération sur financements bilatéraux et multilatéraux. Elle inscrit son action dans le cadr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de coopération au développement, d'influence et de diplomatie économique de la France. Elle intervient dans le cadre des orientations stratégiques définies par l'Etat. Elle opère sans préjudice des missions des organismes privés compétents en matière d'expertise et de mobilité internationales. Elle intervient en concertation étroite avec tous les opérateurs, qu'ils soient publics ou privés. Elle établit des conventions-cadres avec les ministères et les organismes concernés par la mise à disposition ou le détachement d'experts publics. Ses modalité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III.-Il est créé un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coopération technique internationale, nommé par décret,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renouvelable, sur proposition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ministre chargé de l'économie. Il est chargé de la mise en place effective au 1er janvier 2015 de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par fus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 France expertise internationale ", d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Assistance au développement des échanges en technologies économiques et

financières ", d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Ensemble pour une solidarité thérapeutique hospitalière en réseau ", d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International ", du groupement d'intérêt public " Santé protection sociale internationale " et de l'association " 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et la coordination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

IV.-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se substitue à l'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aux groupements d'intérêt public et a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mentionnés au III à la date d'effet de leur dissolution et, au plus tard, le 1er janvier 2015 dans tous les contrats et conventions que chacun d'entre eux a passés pour l'exécution de ses missions. A la date d'effet de leur dissolution, leurs biens, droits et obligations sont transférés de plein droit et en pleine propriété à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sans perception d'impôts, de droits ou de taxes.

V.-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est substituée à l'établissement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aux groupements d'intérêt public et au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 mentionnés au III à la date d'effet de leur dissolution et, au plus tard, le 1er janvier 2015 pour les personnels titulaires d'un contrat de droit public ou de droit privé conclu avec l'un de ces organismes en vigueur à cette date. Elle leur propose un contrat régi par le code du travail. Ce contrat reprend les clauses substantielles du contrat dont les agents étaient titulaires antérieurement au transfert, en particulier celles qui concernent la rémunération.

Les agents concernés disposent d'un délai de trois mois pour accepter les modifications de leur contrat qui leur sont proposées à la suite du transfert d'activité. En cas de refus de ces agents,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procède à leur licenciement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es textes qui leur sont applicables. Les salariés dont le contrat de travail est transféré demeurent à titre transitoire régis par la convention ou l'accord collectif qui leur est

applicable. La convention nationale applicable à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leur devient applicable dès que les adaptations nécessaires ont fait l'objet d'un accord ou, au plus tard, quinze mois après leur transfert.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a vocation à rassembler au 1er janvier 2016 l'ensemble des opérateurs spécialisés de coopération technique, selon des modalités adaptées à leurs missions et statuts. Elle assure l'ensemble des fonctions transversales des opérateurs et comprend des départements thématiques. Elle dispose d'un fonds d'intervention pouvant prendre la forme d'un fonds de dotation.

VI.-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coopération technique internationale préside le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Il siège au conseil d'administration des organismes rattachés à l'agence. Il est chargé de la coordination stratégique et opérationnelle des actions publiques de coopération technique.

VII.-Le directeur général de l'agence assure la direction exécutive de l'agence. Il est nommé pour une durée de trois ans renouvelable, sur proposition du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du ministre chargé de l'économie. Les responsables des départements thématiques sont nommés par le directeur général sur proposition des ministères concernés.

VIII.-Il est créé auprès de l'Agence française d'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un comité d'orientation relatif au développement de l'expertise technique publique et privée, comprenant notamment des représentants des ministères, des organismes, des entreprises intervenant dans le domaine de l'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et des représentant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e comité est présidé par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coopération technique internationale. Il est organisé en sous-comités thématiques qui participent à la définition de la stratégie de chaque département thématique de l'agence en lien avec les ministères concernés. Les présidents des sous-comités sont nommés par le délégué interministériel à la

coopération technique internationale sur proposition des ministères concernés. Sa composition et ses règles d'organisation et de fonctionnement sont fixées par décret.

Article 13 (abrogé)

Abrogé par LOI n°2014-773 du 7 juillet 2014 - art. 13

TITRE II : DISPOSITIONS RELATIVES A L'EXPERTISE TECHNIQUE INTERNATIONALE

Article 14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V)

Article 15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 art. 1 (V)

Article 16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 art. 2 (V)

Article 17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 L761-6 (V)

Article 18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 art. 3 (V)

Article 19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 art. 4 (V)

Article 20

A modifié les dispositions suivantes :

Modifie Loi n°72-659 du 13 juillet 1972 - art. 8 (V)

TITRE III : ALLOCATION AU CONJOINT

Article 21

I. — Il est créé une allocation au conjoint versée au conjoint ou au partenaire lié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de l'agent civil de l'Etat en service à l'étranger qui n'exerce pas d'activité professionnelle ou qui exerce 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pour laquelle il perçoit une rémunération brute totale annuelle inférieure ou égale à un montant fixé par voie réglementaire.

Cette allocation se substitue au supplément familial dont bénéficient les personnels civils de l'Etat en service à l'étranger.

Cette allocation ne bénéficie pas aux conjoints ou aux partenaires liés par un pacte civil de solidarité des personnels contractuels recrutés à l'étranger sous le régime des contrats de travail soumis au droit local.

II.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fixées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TITRE IV : DISPOSITIONS RELATIVES AUX OPERATIONS DE SECOURS A L'ETRANGER

Article 22

L'Etat peut exiger le remboursement de tout ou partie des dépenses qu'il a engagées ou dont il serait redevable à l'égard de tiers à l'occasion d'opérations de secours à l'étranger au bénéfice de personnes s'étant délibérément exposées, sauf motif

légitime tiré notamment de leur activité professionnelle ou d'une situation d'urgence, à des risques qu'elles ne pouvaient ignorer.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précisées, en tant que de besoin,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Article 23

L'Etat peut exercer une action récursoire à l'encontre des opérateurs de transport, des compagnies d'assurance, des agents de voyage et autres opérateurs de la vente de voyages et deséjours, ou de leurs représentants, auxquels il a dû se substituer en organisant une opération de secours à l'étranger, faute pour ces professionnels d'avoir fourni la prestation de voyage ou de rapatriement à laquelle ils étaient tenus à l'égard de leurs contractants.

Les conditions d'application du présent article sont précisées, en tant que de besoin, par décret en Conseil d'Etat.

La présente loi sera exécutée comme loi de l'Etat.

Fait à Paris, le 27 juillet 2010.

Nicolas Sarkozy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Le Premier ministre,

François Fillon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t européennes,

Bernard Kouchner

(1) Travaux préparatoires : loi n° 2010-873. Sénat : Projet de loi n° 582 rect. (2008-2009) ; Rapport de M. Joseph Kergueris,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n° 262 (2009-2010) ; Avis de M. Louis Duvemois, au nom de la commission de la culture, n° 237 (2009-2010) ; Texte de la commission n° 263

(2009-2010) ; Discussion et adoption, après engagement de la procédure accélérée, le 22 février 2010 (TA n° 73, 2009-2010). Assemblée nationale : Projet de loi, adopté par le Sénat, n° 2339 ; Rapport de M. Hervé Gaymard,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étrangères, n° 2513 ; Avis de M. Gilles d'Ettore, au nom de la commission des affaires culturelles, n° 2505 ; Discussion et adoption le 5 juillet 2010 (TA n° 507). Sénat : Projet de loi, modifié par l'Assemblée nationale, n° 609 (2009-2010) ; Rapport de M. Joseph Kergueris, rapporteur, au nom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n° 655 (2009-2010) ; Discussion et adoption le 12 juillet 2010 (TA n° 142, 2009-2010). Assemblée nationale : Rapport de M. Hervé Gaymard, rapporteur, au nom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n° 2722 ; Discussion et adoption le 12 juillet 2010 (TA n° 521).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 and the Impact of the Public Diplomacy Law in South Korea

JIN Yun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concept of public diplomacy was first introduced in 1965, the history of the world has undergone a major upheaval over half a century. Public diplomacy, which was used as a tool for political propagand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as rekindled by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by the United States, and since then, academic research on public diplomacy has increased, and governments have actively promoted public diplomacy.

Looking at Korea's history of public diplomacy, Korea has developed foreign cultural diplomacy, led by domestic politics and economy after World War II. He actively promoted participation in sports competitions and overseas exchange

study by international students and researchers. In 2010, the government promoted public diplomacy by designating it as the first year of public diplomacy. Although the start is late, Korea places great importance on public diplomacy. In 2016, the Public Diplomacy Act was promulgated in Korea,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promulgated the following year. The promulgation of the "Public Diplomacy Act" legally guaranteed the status of Korean public diplomacy projec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and allowed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o be systematic and efficient.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details of the public diplomacy law in detail, identified the core characteristics of the law, and interpreted the purpose, development demand, and direction of Korea for a new level of public diplomacy.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13 provisions of the Public Diplomacy Act, Korea's public diplomacy was largely divided into three main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in terms of the quality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improvement of public diplomacy and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Next, we present a consistent direction of implementation for public diplomacy in the course of planning and operation for specific aspects of the scheme and policy. Finally,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power of the public against the backdrop of a new era of public diplomacy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and emphasizes the power of the

public. Through this characteristic analysis, we looked at the overall framework of Korea's new phase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Public Diplomacy Act.

Next, we analyze the public diplomacy laws of the United States, Japan, France, and the three countries. If you analyze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countries' public diplomacy laws, you can better understand the advanta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on. In the process of comparing other countries' legal settings, we found some problems as follows in Korea's public diplomacy law. First, the specific aspects of the project need to be supplemented; second, the division of public diplomacy should become clearer; Third, the promotion of 'privateization' of public diplomacy is necessary; Fourth,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and use of newspaper media businesses in legal terms; fifth, the method of identifying subject authority and using the details of grants is unclear and the supervisory system is not strict.

Lastly, we will analyze the public diplomacy law and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public diplomacy practice. The Public Diplomacy Act, enacted in 2016, is divided into timing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public diplomacy project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Public Diplomacy Act promotes the overall strategic plan of Korean public diplomacy more systematically. Since 2016, there have been many new changes in public

diplomacy projects legally guaranteed and guided. As budget input increases after legisl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ublic are mor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ublic diplomacy. National diplomacy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government-led public diplomacy. Globally, Korea is culturally and diplomatically cooperating with more countries and deepening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cultural and diplomatic projects, the government also expanded its push for projects in the field of policy and diplomacy.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public diplomacy project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iplomacy Act, it will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diplomacy in both aspects of the national image evaluation survey of foreigners and Korea's international status index analyzed by various institutions.

Overall, the launch of the Public Diplomacy Act is a major step forward in the overall public diplomacy project. The law systemized the overall business structure of public diplomacy and improved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diplomacy by providing clearer strategic guidance. However, Korea's public diplomacy is still a rudimentary stage of development, with regulatory and improvemen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specific business activities of legal policy itself or public diplomacy. First, while emphasizing mutual cooperation and support obligations in enacting the law, it did not disclose how

clearly each entity defined the size of its author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its work. If this distinction of authority is ambiguous, conflicts can arise in the process of actual work promotion, resulting in an ambiguous area where tasks overlap or tasks are not controlled by each other. Second, the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public diplomacy does not secure systematic policy directions, but now public diplomacy is focused only on the realm of cultural diplomacy. Public diplomacy projects in other area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Third, the effectiveness of the budget should be enhanc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inspection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look more strictly at related policy regulations whether the budget for promoting public diplomacy projects is actually spent on work or whether the real story has been reversed. Fourth,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ublic diplomacy requires a shift of vision from provider-centered to acceptor-cent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ublic diplomacy, it is necessary to learn how to localize "tailored and two-way public diplomacy" tailored to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people's characteristics. Finally, when a country establishes a public diplomacy policy, diplomatic goals should be set to conform to universal values, and it is desirable for public diplomacy to reflect such values.

**Keywords: Korean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 Law, Cultural
Diplomacy, National Image**

Student Number : 2018-25119